



2013 December FTA 무역 리포트

01 FTA 포커스

- I.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02 FTA 최근 동향

- I. 관세청 주요 이슈
- II. 우리나라 FTA 동향
-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03 한·미 FTA 교역 동향과 시사점

- I. 對미 교역동향
- II. 미국의 한·중·일 교역
- III. 한·미 FTA 발효 2년차와 시사점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일반기계 산업

- I. 기계산업의 교역동향
 - II. 일반기계의 세부 품목별 교역동향
 - III. 일반기계 산업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 IV. 시사점 및 활용방안
- 특집: 국제원산지정보원 주관 「제5회 FTA전문가포럼」 주요내용
2013년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05 FTA 교역지도

부록

Contents

FTA 무역 리포트 || 2013. 12 No.4

01. FTA 포커스	3
I.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02. FTA 최근 동향	9
I. 관세청 주요 이슈	10
II. 우리나라 FTA 동향	12
III. 해외 FTA 관련 동향	15
03. 한·미 FTA 교역 동향과 시사점	19
I. 對미 교역동향.....	20
II. 미국의 한·중·일 교역	28
III. 한·미 FTA 발효 2년차와 시사점	33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일반기계 산업	35
I. 기계산업의 교역동향.....	36
II. 일반기계의 세부 품목별 교역동향	40
III. 일반기계 산업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42
IV. 시사점 및 활용방안	49
특집: 국제원산지정보원 주관 『제5회 FTA전문가포럼』 주요내용	51
2013년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59
05. FTA 교역지도	65
부록	89

01

FTA 포커스



01. FTA 포커스

1.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1) 머리말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9개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다. 중국과는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WTO 다자간협상이 부진한 진행상황이며, 지역경제 협력의 심화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걸쳐 많은 FTA를 체결하여 발효하고, 계속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U, 미국이라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발효는 그 의미가 크며, 향후 중국·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가히 FTA시대라 할 만하다. 이러한 FTA 시대에 FTA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FTA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 문제가 대두된다. 문제는 이러한 원산지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투입하여 FTA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대기업 협력업체)은 그러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현황

FTA 원산지 관리는 원산지판정 기초 정보·자재명세서(BOM) 관리·원산지별 재고관리·원산지증빙자료 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원산지판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관리할 ERP 시스템 등의 부재로 인하여 재고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FTA 원산지 관리는 원산지결정기준·관세평가에 기초한 가격결정·HS Code 분류·충분가공 및 직접운송 입증 등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다수의 FTA 체결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는 전문성 제고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3)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문제점

중소기업은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RP 및 FTA System 구축이 미비하고, 동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액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FTA 전문인력 고용 등에 따라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즉, 중소기업에게 FTA 원산지관리는 혜택보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 FTA 컨설팅 지원사업이 단발성 컨설팅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에 부적합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대기업(수출자)에게 발급하는 다단계형의 현행 FTA 원산지관리 체계는 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 FTA 활용 준비 비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 준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ERP 운영

대기업은 SAP, Oracle 등 고도화된 ERP 시스템 운영 및 회계 전문가의 직간접 활용을 통해 ERP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ERP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 ERP를 이용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기업은 고액의 비용을 들여 고도화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ERP와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FTA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기초 정보가 부실하여 ERP와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원산지 관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 전문가 활용

대기업은 관세사 등 FTA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여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거나,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직간접관리 형태의 FTA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FTA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체직원을 통한 원산지 관리 및 질의응답 수준의 단발성 컨설팅을 통한 FTA 원산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비용과 수익구조

대기업(수출기업)은 해외수입자와의 FTA 혜택 공유를 통해 수출액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사 해외법인을 통한 FTA 특혜세율을 직접 적용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원산지관리 비용 수준이 미미하여 원산지관리에 부담을 적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FTA 원산지관리 비용대비 수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원산지관리 비용 수준이 높아 FTA활용에 소극적이다.

마. 원산지검증 책임

대기업(수출기업)은 하위 벤더들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의 자료를 받기 때문에 원산지검증이 들어왔을 시 그 책임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장 지배구조상 중소기업은 그 책임이 과중될 수밖에 없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은 FTA 활용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5)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개선방안

가. 제도적 보완 사항

상기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에 대한 경제·심리적 부담(검증)만 있고 실질적 혜택이 없어 자발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수출기업의 공급선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상 FTA 업무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병행이 불가피하여 원산지관리에 전념하기 힘들고, 잦은 업무변경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FTA 혜택이 없이 비용적인 부담만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 FTA 지원사업 등은 FTA 혜택을 향유하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원산지검증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와 같은 관시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검증에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단발적인 교육만으로는 복잡다양한 원산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은 제품생산에 집중하고 원산지관리는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FTA원산지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나.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인증관리시스템 도입

FTA 혜택을 향유하는 수출기업(대기업)이 원산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 및 신뢰성 제고하기 위하여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인증관리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상기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의 도해도는 다음 순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자체적으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 업무를 원산지관리 전문가(관세사)에게 아웃소싱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산지관리 전문가(관세사)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문서에 대하여 인증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다.



둘째, 원산지관리 전문가(관세사)는 FTA-PASS 등 중소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산지 문서를 발급하고, 발급한 원산지 관리 문서를 관세청의 “원산지 문서 유통·이력 인증 관리시스템”에 전송한다.

셋째, 원산지관리 문서가 관세청의 “원산지 유통·이력 인증 관리시스템”에 전송되면, 관세청은 “원산지확인 인증확인 문언,” “원산지인증 식별부호(QR코드 등)” 및 “인증발급 번호”가 자동적으로 표시(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정보는 중소기업청과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원산지 유통·이력 인증 지원시스템”에 전송되게 된다.

넷째,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 문서가 필요한 수출기업(대기업)은 중기청의 “원산지 유통·이력 인증지원시스템”을 조회하여 원산지확인서를 구매하고, 자사 시스템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활용한다.

아울러, 원산지관리 문서를 전송한 중소기업체는 수출업체의 구매수수료에 비례하여 일부를 환급받게 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동 방안이 실현된다면, 대·중소기업 간에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출기업(대기업)에서 구매한 원산지관리 문서의 수수료는 FTA 원산지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여, 원산지관리업체로 성장을 이끌어 내어 FTA 원산지관리 업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체는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인증 지원시스템”의 환급 기능을 통한 원산지 관리 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관세사 등 FTA 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Total) 서비스 비용 역시 절감할 수가 있다. 게다가, 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 문서의 신뢰성 및 원산지 검증 안정성 확보로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비용부담을 분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고,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위탁대행 원산지관리로 중소기업 원산지 문서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 수익 향유 수출기업(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FTA로 인한 과실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형태의 방안이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02

FTA 최근 동향



02. FTA 최근 동향

1. 관세청 주요 이슈

World Bank, 우리나라 관세행정 세계최고로 평가 (2013. 10. 30)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0월 29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세계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한 국가 전체 평가순위에서 사상최초로 7위를 달성하였으며, 관세청의 통관행정 분야에 대한 좋은 평가가 국가전체 순위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G20 국가 중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확고하게 1위를 차지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수출로 확인된 Global 관세행정 선도국으로서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소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 (2013. 10. 31)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추진한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기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관장은 중소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확인서가 FTA특례법령과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지 심사¹⁾ 및 확인을 한다.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세청에서는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빙 부담을 덜고 확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서울세관에서 중소기업체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이다.

코스타리카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추진 (2013. 11. 07)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코스타리카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관세청장은 11월 7일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부통령(Mr. Luis Liberman Ginsburg)에게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하였다.

또한, 양국은 코스타리카에 유니패스(UNI-PASS) 수출 등 관세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루이스 코스타리카 부통령은 관세행정 정보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무역원활화에 기여한 것에 공감하고, 코스타리카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패스(UNI-PASS) 도입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1) 품목분류번호(HS코드) 6단위로 협정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심사함

한편, 관세청은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유니패스(UNI-PASS)를 수출한 바 있으며, 최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유니패스 수출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다.

「FTA 포털 시스템」 대폭 개편 (2013. 11. 21)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나라 기업이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정부 사이트인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총 6개월간에 거쳐 진행된 이번 개편 사업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인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기능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금번 시스템의 상세 개편에서는 개인 홈페이지 기능인 마이메뉴(my menu)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원산지검증' 분야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가검증 Tool' '검증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통합검색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건국대학교와 MOU 체결 (2013. 11. 21)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주시경)은 21일 건국대학교(국제비즈니스대학)의 공동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술·연구 활동 공유, 현장학습 및 상호방문 활성화, 교수인력 등 교육자원 교류, 기타 필요한 활동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연수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세관 현장체험학습관을 활용한 무역관련 실무교육과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건국대학교는 세관공무원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등을 지원하게 된다.

카툰식 “FTA-toon 통합 매뉴얼 발간” (2013. 12. 02)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FTA 활용 매뉴얼인 'FTA-toon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FTA-toon 통합 매뉴얼'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검증 대응 등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해 연재만화 형식으로 발간한 것을 총 합본으로 제작하여 종합적인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책자의 구성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카툰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책자는 전국세관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하고 있으며,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E-Book-Zone에 게재되어 있다.

콜롬비아·볼리비아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2013. 12. 0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2월 2일 콜롬비아 관세청장(Ms. Claudia Maria Gaviria Vásquez) 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한·콜롬비아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12월 3일에는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볼리비아 관세청장(Ms. Ardaya Vazquez)과 제2차 한·볼리비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볼리비아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을 위한 수출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선진 관세행정기법 공유 방안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유니패스(UNI-PASS)가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에 구축되면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중남미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 활용 Know-How 공유를 위한 「FTA 성공 사례 경진대회」 개최 (2013. 12. 09)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2월 9일 코엑스에서 수출입 기업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성공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부 3.0 기조에 발맞추어 다양한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FTA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FTA 활용분야,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등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4편의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도움으로 고질적인 해외통관애로를 극복한 기업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FTA 활용체제를 구축한 기업도 특별사례로 소개되었다.

관세청장(백운찬)은 개최사를 통해 FTA 이행경험이 짧은 기업에 이번행사가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기업이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I. 우리나라 FTA 동향²⁾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 결과 (2013. 11. 04 ~ 05)

지난 11월 4일과 5일(미국 시간) 한·미 FTA 상품무역위원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한·미 양국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한·미 FTA에 따라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19개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특히,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양국은 제1차 회의 이후 양국 간 상품 교역, 원산지 및 통관분야 협정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세관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출처: 우리나라 FTA 동향 전체 기사 무역협회(http://www.kita.net/trade/fta_news/fta_news_kita.jsp) FTA 뉴스에서 참조

이외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양국은 개성공단 및 남북협력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정 부속서 22-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이행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6차 협상 개최 (2013. 11. 04)

한·인도네시아 CEPA 제6차 협상이 11월 4일에서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김영무 FTA 교섭관)와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장관(사할라 룬반 가을 전문자문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규범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본 협상은 지난 10월 양국간 정상회담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확대, 규범분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2013. 11. 15)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TPP 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우태희 통상교섭실장)는 공청회 개최사를 통해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라 현재 우리의 FTA 추진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 2세션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KIEP(김영귀 부연구위원)에서는 TPP 참여시 2.5~2.6%의 실질 GDP 증가, 불참할 경우에는 최대 0.19%의 실질 GDP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5차 협상 개최 (2013. 11. 18 ~ 21)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제5차 협상이 11월 18일에서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가 수석대표로 터키쪽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양측은 제3차 협상(11.3월)까지 진행 후 중단되었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지난 8월 재개하여,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중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허안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협의 사항은 서비스협정에서는 지난 협상시, 기본적으로 GATS(WTO 서비스무역협정) 방식의 협정문 구조에 합의하고, 협정문 전반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또한, 투자협정에서는 우리측이 제시한 새로운 협정문 초안을 기반으로 향후 유보리스트 작성 등 세부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중 FTA 제8차 협상 개최 (2013. 11. 18 ~ 22)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중국에서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 조리(차관보급)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상품분야에서는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개최되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9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표명 (2013. 12. 01)

우리나라 정부는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³⁾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약’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현재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다.

한편, TPP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동향과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 참가조건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바, ‘관심표명’은 이를 위해 ‘예비 양자협약’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이며, ‘공식적인 참여선언’과는 다르다.

한·캐나다 FTA 협상 “실질적 진전” 확인 (2013. 12. 04)

지난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 결과, 유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캐나다 FTA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임.

양국은 제14차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11월 25일 ~29일)에서 시장접근 분야와 협정문 분야 모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최대한 조속히 한·캐 FT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캐나다 차원의 “예비 양자협약”을 진행하였다.

한·호주 FTA 타결 (2013. 12. 05)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윤상직)과 호주 통상·투자장관(Andrew Robb)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호주 양국은 3일과 4일 양일간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진행한 이후, 한국과 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initialing)을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기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III. 해외 FTA 관련 동향⁴⁾

터키, 3년 반만에 EU가입 절차 재개 (2013. 11. 08)

터키와 EU 양측은 실무적인 협상을 다시 시작하였다. 협상 내용에는 그동안 묶여있던 22조항(Chapter 22)부터 재개할 것이며, 이 조항은 국가의 정책과 EU 정책과의 통합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터키는 인권과 사회적 정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23, 24조항 역시 곧 협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터키의 EU 가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 측에서 보면 터키가 EU 측이 제시한 조항들을 준수할수록 터키에서의 경영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터키가 EU 의존도에서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 등 아시아 친화적 정책을 많이 구사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TPP협상, ISDS 조항 도입 합의 (2013. 11. 10)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12개국은 투자 시 발생하는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투자자 국제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4) 출처: 해외 FTA동향 전제기사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http://www.globalwindow.org/>) 에서 자료 참조

5) ISDS는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가 진출한 국가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손실을 본 경우 국제 중재기관에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임.

또한, 해당 분쟁 해결을 위한 심의 내용이나 서류를 공개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중재인 후보자도 미리 결정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미국은 글로벌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을 촉구해왔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호주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가국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한다는 조항 포함을 조건으로 동의한 상태이다.

미·EU FTA(TTIP) 2차 협상 완료 (2013. 11. 21)

EU와 미국은 지난 2월 13일 미·EU FTA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이미 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가장 관심을 끄는 협상 분야는 바로 산업 관련 규제 규정이다. 이번 TTIP를 통해 세계 규제와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협상이 이미 진행되었다. 주요 협상 대상 품목은 의약품, 화장품, 의약품, 화학, 농약, ICT 또는 자동차 등이었다.

화학제품의 경우 EU 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해야 하는 등 미국보다 EU 측의 규정이 엄격한 상태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화학물질 안전평가시 중복되는 항목의 상호 평가결과 인정, 화학물질 분류 기준의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파나마·미국 FTA 발효 1주년 (2013. 11. 22)

2003년 시작된 파나마·미국 FTA 협상은 2007년 파나마 국회 비준을 통과해 미 국회의 비준통과만을 남겨두고 미국 정치상황 악화로 비준 처리가 보류되었다.

이후 미 의회는 FTA 비준을 위해서 파나마 조세조약, 노동법 통합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에 파나마 마르티네리 정권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2011년 미 상하원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됐고, 2012년 10월 31일 파나마와 미국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파나마·미국 FTA에서는 농축산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관련 품목에 관해서는 할당제 도입 및 점진적으로 감세를 진행해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만, FTA 발효 후 1년이 지난 지금 FTA 기대효과가 미미한 상태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 2014년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 (2013. 11. 22)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에 2014년 WTO Commitment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3,425개의 관세선(tariff line)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인상 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2,963개의 관세선에는 현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462개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수입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2014년도부터 새로운 관세율 적용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WTO Commitment에 적합하며 완제품과 부품·소재 간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수입관세를 조정해 관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브라질 기업, 미국과 FTA 체결 필요성 제안 (2013. 11. 24)

최근 브라질 국가산업연맹(전경련과 유사단체) CNI는 미국 중앙은행 봉사에서 열린 양국 경제인 회의에서 브라질과 미국 간의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브라질의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으로 브라질은 미국에서 주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대미국 무역 흑자를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 적자가 지속하고 있다.

아직은 미국·브라질 간 FTA 체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간 내에는 쉽게 타결되지 않으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란 핵협상 극적 타결, 제재 완화 예측 (2013. 11. 26)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 이란 핵 협상이 24일(일)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타결 내용은 향후 6개월간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임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6개월간 추가제재는 미시행되며, 이란산 원유 판매 추가 감축노력이 중단된다. 이번합의는 이란 핵 문제의 전면 해소를 위한 3단계의 포괄적 합의안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하며, 합의문 말미에 향후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03년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 도출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제재 완화로 인한 경제적 실익과 함께 불신의 관계를 지속해 온 양측 간 조성된 화해 분위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방글라데시, 미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TICFA) 체결 (2013. 11. 30)

방글라데시는 지난 11월 26일 미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TICFA,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Forum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TICFA 체결 논의는 2001년 처음 시작됐으나 방글라데시 내 좌파 및 진보세력의 반대,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계속 지연된 바 있다.

TICFA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양국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TICFA 협상을 통해 관세혜택(GSP)의 재개 및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TICFA 협상을 통해 방글라데시 노동환경 개선, 무역투자 자유화와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자동차업계, 우리나라에 무역장벽 철폐 요구 (2013. 12 .05)

지난 11월 7일, EU·한국 회담에서 유럽 자동차업계 대표 기관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 유럽타이어제조사협회에서 현재 무역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3개 기관에서는 협정발효 이후 EU집행위가 EU 자동차산업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으나, EU 집행위에 현재 무역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런 요구는 유럽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유 무역이 실제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EU 자동차기관의 주장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구체적으로 EU 측에서 어떤 무역장벽이 걸림돌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산 수입차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자동차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03

한·미 FTA 교역 동향과 시사점



03. 한·미 FTA 교역 동향과 시사점

임병호(국제원산지정보원 주임연구원)

- 분석배경 :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는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으로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후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을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시장에서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
- 분석범위 : 한·미 FTA 발효 전 1년 6개월, 발효 후 1년 6개월 교역 및 주요 품목, 미국과 한·중·일 3국의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입 증감동향

I. 對미 교역동향

1) 對미 교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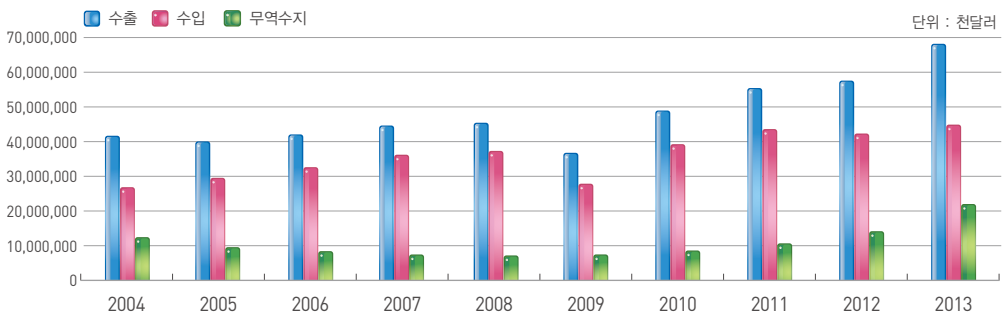
미국경기회복과 함께 한·미 FTA 효과로 무역수지·흑자 유지

2013년 11월 기준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0%(2위), 수입의 8%(3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수출금액은 569억 달러, 수입은 377억 달러,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는 주요 수출국이다. 2013년 11월 기준 對미 수출은 5.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6.3%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1998년 이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對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왔다. 무역수지 흑자폭도 1998년 24억 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 1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흑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증가는 미국의 국내 경기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분기와 3분기 전기대비 2.5%와 2.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3-1 | 對미 수출입 동향 (2004 - 2013)



주 : 2013년도는 예상치.

또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도 이러한 수출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12년 상반기 미국의 對한 수입은 5.4% 증가하였는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고무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밸브, 펌프, 공작기계는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품목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 변수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지출의 감축, 정부 예산안 협상,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다만, 재정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구전략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우려가 일시적으로 접어들면서 수출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⁶⁾

2) 품목군별 수출동향

한·미 FTA 발효이후 18개월간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은 기계류와 전자제품 중심

다음은 한·미 FTA 발효시점인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발효 이후 18개월과 발효 이전 18개월을 MTI 1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한 수출동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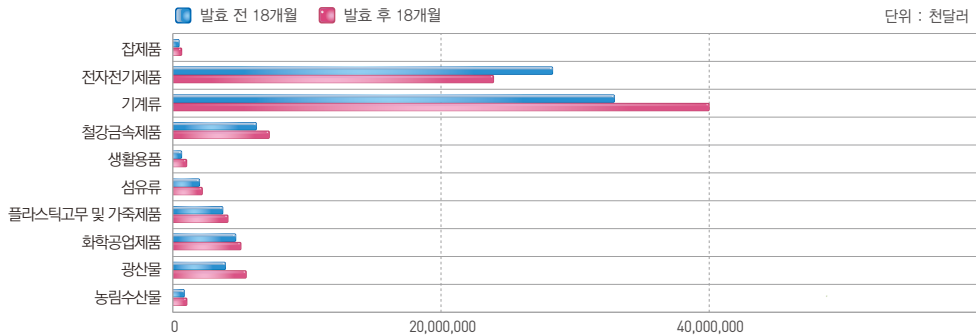
표 3-1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출증감률 (MTI 1단위)

단위 : 천달러, %

MTI 1단위	발효 전 18개월 (2010. 9 - 2012. 2)			발효 후 18개월 (2012. 3 - 2013. 8)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총계	83,675,650	100	30.0	90,230,661	100	7.8
0 농림수산물	823,606	1.0	19.4	954,216	1.1	15.9
1 광산물	3,905,455	4.7	-9.8	5,408,897	6.0	38.5
2 화학공업제품	4,620,186	5.5	46.6	4,977,794	5.5	7.7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676,141	4.4	50.4	4,015,069	4.4	9.2
4 섬유류	1,949,439	2.3	10.4	2,137,757	2.4	9.7
5 생활용품	694,271	0.8	14.4	967,279	1.1	39.3
6 철강금속제품	6,204,147	7.4	81.2	7,262,965	8.0	17.1
7 기계류	33,019,369	39.5	56.0	39,978,580	44.3	21.1
8 전자전기제품	28,290,369	33.8	7.4	23,933,070	26.5	-15.4
9 잡제품	492,667	0.6	10.0	595,035	0.7	20.8

6) 주간 무역(2013. 12. 4)미 연준, 양적완화규모 그대로 유지기로 결정

| 그림 3-2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출금액(품목군별 비중)



한·미 FTA 발효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산업군별 수출 비중에는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발효 전 39.5%에서 발효 후 44.3%로 더욱 증가하였으며, 전자전자제품은 발효 전 33.8%에서 발효 후 26.5%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1) 수출증가품목군 : 생활용품 > 광산물 > 기계류 > 잡제품

① 생활용품 :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출비중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생활용품 수출증가율은 모든 품목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9.3%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0.8%에서 발효 후 1.1%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금액 역시 잡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예품의 수출증가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가구가 48.3%, 완구 31.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의 수출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공예품과 가구, 완구의 수출증가율이 의미하는 바는 크지 않다.

또한 이들 품목은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0% 인 품목으로 한·미 FTA의 특혜관세효과라기 보다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증가의 효과와 함께, 선진국과의 FTA체결로 소비재에 대한 수출품목이 다변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② 광산물 : 제트유 및 등유를 중심으로 한 FTA 효과

한·미 FTA 발효 후 두 번째로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광산물 제품이다. 발효 전과 비교하여 38.5%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낸 광산물제품에는 광물, 광물성연료 등이 포함되며 광물성연료에는 석탄, 석유제품, LPG 등이 포함된다.

광산물 품목 중 수출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석유제품으로, 2012년 수출금액 28억 달러에서 2013년 10월 누적 수출금액이 3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6%가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트유·등유 제품으로 이로 인해 울산시의 대미 수출은 사상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⁷⁾

특히 제2710호의 석유제품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배럴당 52.5센트의 종량세 물품으로 한·미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FTA 수혜 품목으로 볼 수 있다.

③ 기계류 : 자동차 (12.9%) 및 자동차 부품 (9.5%)의 수출증가가 견인

기계류는 미국 총 수출금액의 44.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FTA 발효 후 증가율 역시 21.1%를 기록하여 주요 FTA 수출품목으로 손꼽힌다. 기계류 중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수출증가율이 12.9%, 9.5%를 기록하여 기계류 수출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2.5%에 달하는 자동차(제8703호)와 자동차 부품(제8708호)의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관련 수출업체들의 수출증가가 돋보였다.

또한 미국의 주요 산업을 견인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경기회복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OEM 생산업체로부터 구매물량을 확대하는 점도 수출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가 고급화 대형화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미국시장에서 한국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인한 수출실적 증가 역시 증가율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⁸⁾

(2) 수출감소품목군

① 전자전기제품 :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

전자전기제품은 기계류에 이어 2위 수출에서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물품이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39.7%), 반도체(9.8%), 컴퓨터(0.6%)가 있다.

전자전기제품의 2013년도 수출은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1년의 수출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2011년에 92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는 57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10월 누적 65억 달러로 2011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코드분할식 전화기(-6.8%), 시분할식전화기(-48.2%), 기타무선전화기(-71.2%)등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수입세율이 0%인 관계로 한·미 FTA의 효과가 없었던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중 북미수출용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점 등이 주요 수출감소원인으로 판단된다.

7) 파이낸셜 뉴스(2013. 10. 16), '울산 대미수출 올 100억불 넘는다'.

8) 경향신문(2012. 12. 9), '에쿠스, 미국서 최고 럭셔리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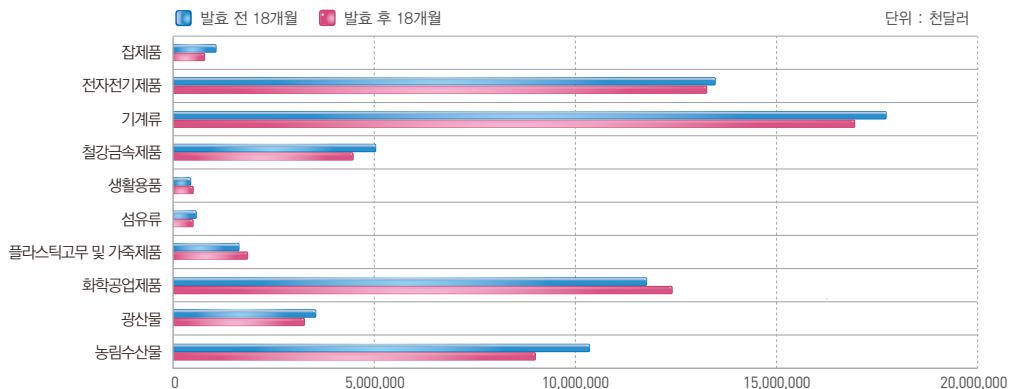
3) 품목군별 수입동향

| 표 3-2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입증감률 (MTI 1단위)

단위 : 천달러, %

MTI 1단위		발효 전 18개월 (2010. 9 - 2012. 2)			발효 후 18개월 (2012. 3 - 2013. 8)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총계		65,841,205	100	25.9	63,162,737	100	-4.1
0	농림수산물	10,349,613	15.7	35.0	9,035,604	14.3	-12.7
1	광산물	3,581,166	5.4	95.3	3,307,499	5.2	-7.6
2	화학공업제품	11,778,213	17.9	24.0	12,428,266	19.7	5.5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668,324	2.5	31.5	1,832,894	2.9	9.9
4	석유류	612,798	0.9	42.0	531,729	0.8	-13.2
5	생활용품	435,455	0.7	20.1	480,625	0.8	10.4
6	철강금속제품	5,084,519	7.7	19.0	4,457,529	7.1	-12.3
7	기계류	17,758,978	27.0	21.9	16,998,412	26.9	-4.3
8	전자전기제품	13,502,360	20.5	18.5	13,293,963	21.0	-1.5
9	잡제품	1,069,779	1.6	8.7	796,215	1.3	-25.6

| 그림 3-3 | 對미 FTA 발효 전후 수입금액 (품목군별 비중)



(1) 수입증가품목군 : 생활용품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화학공업제품

① 생활용품 : 'Made in USA' 완구 선호도 증가

생활용품은 우리나라의 對미 수입품목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에 따라 높은 수입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금액은 전체 수출 중 0.8%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증가금액도 작다. 구체적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가방, 완구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며 기본세율 8%의 관세 철폐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기구와 완구 등의 물품은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크게 나뉘는데, 특히 완구용품은 유럽 및 미국산 어린이용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산 장난감에서 납 검출 등 유해성이 언론에 보도되고⁹⁾, 출산율 감소에 대한 1인당 육아지출이 증가하면서, 아이들 완구용품도 중국산 보다는 유럽 또는 미국산 완구용품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 소가죽, 밍크코트 등 고관세 품목 수입증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수입은 발효 후 기준 전체 중 2.9%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주로 에틸렌중합체 필름, 각종 플라스틱 제품과 소가죽, 밍크모피 등이 주요 품목이다.

수입 증가율은 발효 이후 18개월간 약 9.9%로 생활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절대 수입금액이 낮기 때문에 실제 수입증가금액은 크지 않다.

단일제품으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소가죽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밍크모피의 경우도 2012년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밍크모피는 기본세율 16%에 해당하는 고관세 품목으로, 관세 이외에도 개별소비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적용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기타 내국세의 감소가 수입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화학공업제품 : 경쟁력 우위로 미국 의약품의
지속적 수입증가 전망

화학공업제품은 기계와 전자전기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수입품목이다. 화학공업제품의 한·미 FTA 발효 후 18개월 간 수입은 약 124억 달러로 발효전 동기대비 5.5%가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으로는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기초유분 등이 있다.

의약품은 전통적으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국가의 경쟁력이 강하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부터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왔다.

9) 파이낸셜 뉴스(2013. 11. 7), '유해물질 장난감 등 14개 제품 리콜'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술력 향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입 규모가 훨씬 큰 편으로 적자 규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의 의약품이 한·미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의약품의 관세양하는 즉시 철폐가 아닌, 단계적 철폐라는 점, 그리고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¹⁰⁾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미국산 의약품의 수입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입감소품목군 : 잡제품 > 섬유류 >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제품은 미국 수입의 14.3%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품목이다. 수입감소율은 -12.7%로 잡제품과 섬유류에 이어 세번째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물류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 역시 주요 수입 감소품목에 해당한다.

① 밀 : 미국내 공급부족과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

2013년 미국은 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5개년 평균비율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주로 적색경질밀 (HRW) 지역에서 가을과 겨울에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밀 수출국들 (카자흐스탄,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밀생산국들이 2013년 초반 높은 밀 가격으로 파종을 늘렸기 때문이다.

미국내 밀 공급 부족과 다른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2013년도 미국의 밀 수출은 전년보다 약 100 백만 부셸이 적은 950백만 부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동향으로 인하여 한미 FTA의 밀 관세 인하¹¹⁾에도 불구하고 對한국 수출은 큰 영향이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옥수수 :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가뭄으로 인해 2010년도 1,834 백만 부셸에서 2012년 900백만 부셸로 5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2013년에는 약 1,500 백만 부셸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가뭄의 전후인 시기에 있는 한-미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수출량은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는 옥수수 공급이 늘어난 만큼 원료가격의 하락, 경제성장, 동물 사료 수요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료용 (328%) 및 팝콘용 (630%) 옥수수의 높은 관세율이 철폐됨에 따라, 향후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제네릭, Generic)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6월 합의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한 뒤 미국 제약사의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허가 절차가 자동 정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제네릭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문에 따르면, 복제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매일경제, 매경닷컴)

11) 기준세율 4.2%에서 발효 직후 3.4%, 2013년도 2.5%

③ 대두 : 수확량 감소와 중국 대두 수요 급증

미국산 대두수입의 감소는 중국의 대두수요 증가와 미국내 대두 생산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대두 수출은 공급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국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대두 분쇄부문 확장, 식품 제조, 사료 소비, 대두박 수요, 정부 비축정책 등으로 전 세계 대두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과 2012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0년에는 에이커당 43.5 부셀 수준의 수확량이 2012년에는 39.6 으로 감소하였다.

④ 쇠고기 : 국내산 쇠고기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량 감소

미국산 쇠고기는 2005년 이후 2012년 처음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여 총 87,192 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0% 수준 감소한 수치이다. 수입 감소에 대하여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한국의 2013년 1~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5만7997기로 작년 같은 기간 6만5706기보다 11.7% 줄어드는 등 전체 수입육 물량은 1년 새 5.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 쇠고기시장은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산 한우의 공급 과다와 경기침체로 육류 소비 증가폭이 작아지면서 미국산뿐 아니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한우사육 마릿수 과잉 현상 탓에 한우 가격이 저렴해져 소비자들이 굳이 수입 쇠고기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 한우는 물량 과다 현상으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한우협회 등이 소비촉진을 위한 '반값' 할인행사를 마트에서 자주 열면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¹²⁾

국내 육우공급과잉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쇠고기 물량의 감소도 수입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수입 쇠고기의 공급 부족 탓에 가격도 뛰어 지난해 4만9800원이던 미국산·호주산 LA식 갈비(2kg)는 현재 5만9000원으로 18.5% 비싸졌다.¹³⁾

⑤ 돼지고기 : 구제역 우려 종식과 함께 되살아난 국내 생산

우리나라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직후 당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수입금액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구제역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난 뒤인 2012년, 국내 축산 기반이 정비되면서 국내산 돼지의 소비가 되살아났으며, 이와 함께 국내 사육 마리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돼지의 소비증가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은 다시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입 감소는 FTA의 영향보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감소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2) 매일경제, 힘 잃은 수입쇠고기, 2013. 9. 29.

13) 2013년 11월 기준, (동아닷컴, "수입 쇠고기 국내시장 인기도를 살펴봤습니다")

II. 미국의 한·중·일 교역

1) 미국의 전세계 수출입 동향

2012년 12월 기준 미국의 전세계 수출은 전년대비 4.5%, 수입은 3.1%로 각각 증가하였다. 2011년에 비하여 증가폭은 높지 않으나,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조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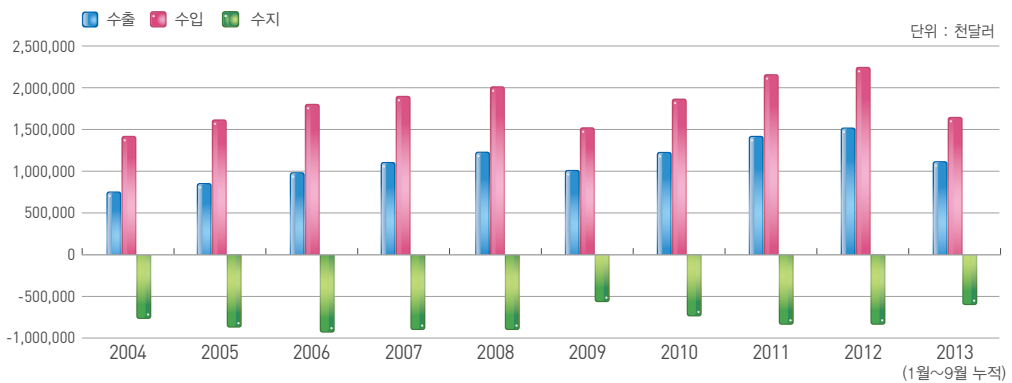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수지는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약7천억 달러 수준이다.

2) 미국의 한·중·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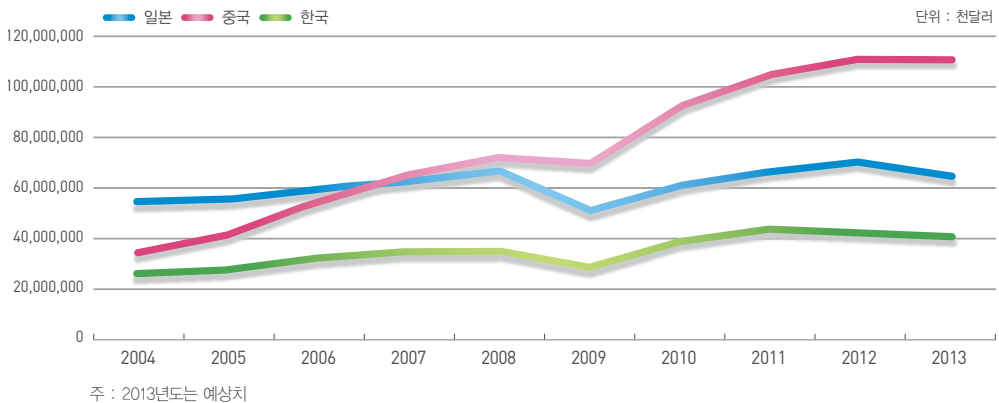
(1) 미국의 한·중·일 수출동향

다음은 미국의 對 한·중·일 수출 주요 20개 품목 중, 중국과 일본과의 수출증감률을 비교한 표이다.

| 그림 3-4 | 미국의 對세계 수출동향 (2004 - 2013)



| 그림 3-5 | 미국의 對 한·중·일 수출동향 (2004 - 2013)



20대 품목 중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18개월 (2012.3 ~ 2013.8)간 수출금액이 발효 전 18개월 (2010.9 ~ 2012.2) 수출금액보다 증가한 품목은 총 8개품목이다.

미국의 수출증가 품목은 전자집적회로(제8542.31호), 의약품(제3004.90호), 광학식기기(제9031.41호), 항공기 부분품(제8803.30호), 밀(제1001.99호), 대두(제1201.90호), 전자집적회로 (제8542.39호) 등이다.

(2) 미국의 한·중·일 주요 수출품목

미국의 對한 주요 20대 수출품목 중,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수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집적회로 : 한국 (135.2%) > 일본 (23.1%) > 중국 (-33.8%)

전자집적회로는 컴퓨터, 휴대전화, TV, MP3 등 디지털 소비제품에 주로 장착되는 중간재 제품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집적회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MFN 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무관세 품목이다.

따라서 미국의 對한 전자집적회로 수출증가는 FTA의 효과라기보다, 오히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스마트폰 열풍으로 전자집적회로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 중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국인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 | 미국의 한·중·일 수출동향 (2012.3~2013.8)

단위 : 천달러, %

HS 6단위	한국		중국		일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5,004,994	25.3	41,430,664	-1.9	19,489,105	23.0
2 8542.31	3,259,697	135.2	2,603,672	-33.8	574,398	23.1
7 1001.99	763,826	6.6	877,568	383.6	1,667,476	-7.4
9 3004.90	950,785	83.0	697,334	40.1	3,138,438	20.6
12 8803.30	654,001	11.4	6,030	4.4	1,019,444	13.1
14 9031.41	533,728	54.1	116,626	-42.1	102,536	-37.6
15 1201.90	486,997	5.5	16,054,590	-21.4	1,528,304	-1.4
17 8542.39	575,536	1.9	945,789	5.4	585,729	44.2

증감률: 직전 동기대비 개별 국가의 해당품목의 증감률

② 의약품 : 한국 (83.0%) > 중국 (40.1%) > 일본 (20.6%)

의약품 기본세율 8%가 한·미 FTA의 발효로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미국의 對한 수출금액이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며 한·미 FTA의 발효 이전부터 미국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업계 당사자는 미국의 의약품 수출증가는 관세인하효과와 더불어 한미 양국의 의약품 국제경쟁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③ 반도체 검사용 기기 : 한국 (54.1%) > 일본 (-37.6%) > 중국 (-42.1%)

반도체 검사용 기기는 우리나라 MFN 관세율 0% 품목으로 한·미 FTA 양허대상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효 후 54.1%에 달하는 對미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일본수출이 -37.6%, 중국수출이 -42.1%로 각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한국수출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對한 수출증가의 배경에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제조에는 반도체 검사용 기기가 필요한 현재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일본의 경우 2012년 수입금액 93억엔으로, 2007년의 578억엔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 자체기술로 반도체 검사기기를 제조하여 직접 반도체 생산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도 과도한 수입의존도 탈피를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④ 대두 : 한국 (5.5%) > 일본 (-1.4%) > 중국 (-21.4%)

제1201호에 속하는 대두는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하여 기본세율 3%가 즉시 철폐된 품목으로 미국의 對한 수출은 발효 이후 약 5.5%의 對한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물품 특성상 대두는 국가정책과 관련성이 깊은데, 대두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은 지난 10년간 중국으로의 수출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중국은 이상기후와 중국내 수급문제로 미국산 대두를 대량 수입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중국내 가축사료 수요둔화 및 국내 공급 증가로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해 항구에 위치한 사료 및 육류 가공업체들의 생산설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의 곡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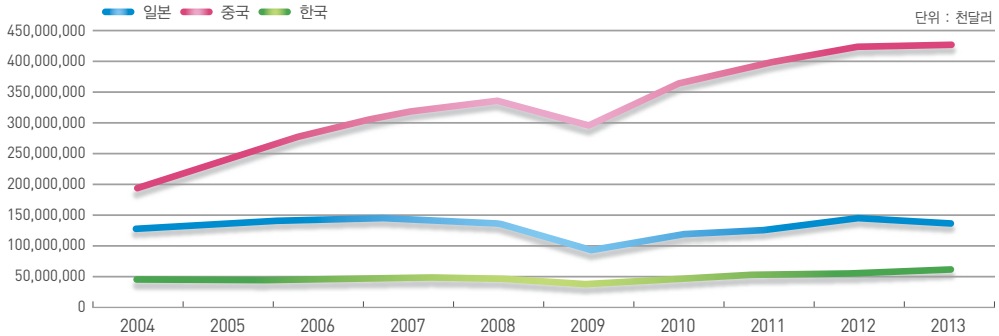
3) 미국의 한·중·일 수입

(1) 미국의 한·중·일 수입동향

다음 [표 3-4]는 미국의 對한 수입 주요 20개 품목 중, 중국과 일본과의 수출증감률을 비교한 표이다. 20대 품목 중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18개월 (2012.3 ~ 2013.8)간 수입금액이 발효 전 18개월 (2010.9~2012.2) 수입금액보다 증가한 품목은 총 4개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전자집적회로(제8542.39/32호), 자동차 부품품(제8708.29호), 자동차료처리기계 (제 8471.41호)이다. 전자집적회로 중 메모리(제8542.32호)의 경우 30.7% 증가하였으며,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8542.39호)는 중국과 일본 모두 수입금액이 감소한데 반하여 對한국 수입만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6 | 미국의 對 한중일 수입동향 (2004 - 2013)



주 : 2013년도는 예상치.

| 표 3-4 | 미국의 한·중·일 수입동향 (2012.3 - 2013.8)

단위 : 천달러, %

HS 6단위	한국		중국		일본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5,077,232	6.7	135,435,045	21.0	67,419,455	16.7
4 8542.39	2,816,913	2.3	725,227	-6.1	600,581	-26.0
11 8708.29	1,277,579	44.0	1,372,317	28.1	979,130	7.5
16 8542.32	1,112,658	30.7	700,523	26.7	736,197	6.1
17 8471.41	609,917	91.9	1,616,360	-19.9	42,025	-22.1

(2) 미국의 한·중·일 주요 수입품목**① 전자집적회로 : 한국 (30.7%) > 중국 (26.7%)
> 일본 (6.1%)**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다. 전자집적회로는 수입관세율 무세인 품목으로, 한·미 FTA 관세철폐 효과는 없었음에도 발효 이후 약 30%에 달하는 對한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동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테슬라의 'Model S'는 순수전기만을 사용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이다.¹⁴⁾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자동차에 비하여 전자 및 전기부품의 사용도가 높으며, 미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는 삼성과 LG등의 국내 업체로부터 부품 조달과 관련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집적회로의 수출 역시 미국내 경기회복과 동반하여 향후 더욱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② 자동차 부품 : 한국 (44.0%) > 중국 (28.1%) > 일본 (7.5%)

제8708호의 자동차 부품은 약 2.5%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즉시 철폐되면서 한·미 FTA의 수혜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효 이후 약 44%에 달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냈다.

자동차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아 다수의 자동차업체가 파산한 2009년 이전 수준인 2007년 판매량 1,600만대에 매우 근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관련 부분품 수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자동차자료처리기계 : 한국 (91.9%) > 중국 (-19.9%) > 일본 (-22.1%)

제8471.41호에 속하는 자동차자료처리기계는 미국 수입관세율 무세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對한국 수입증가율이 91.9%로 나타나, 중국과 일본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8471호 품목의 대미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태블릿 PC의 對미 수출호조와 관련이 깊다. 2010년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 이후, 태블릿 PC 시장이 창출되었고 이는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던 컴퓨터 시장을 더욱 잠식하여, 관련업계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이 주요 태블릿 PC 제조업체이나 현재 태블릿 PC 시장은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의 '갤럭시 탭'이 점차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아가고 있다.¹⁵⁾

태블릿 PC의 출시와 함께 그 동안 품목분류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지난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 (2012. 5. 22)에서 태블릿 PC를 제8471호로 최종분류함에 따라, 해당 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조선일보(2013. 11. 22), '전기차를 차가 아닌 IT기기로 접근... 테슬라 열풍 일으켜'
15) 국민일보(2013. 11. 19), '삼성, 태블릿 PC 시장 20% 점유'

III. 한·미 FTA 발효 2년차와 시사점

1)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긍정적 평가

한·미 FTA가 발효된 '12년 3월 이후 18개월간 대미 수출은 발효전 동기 대비 약 7.8% 증가, 대미 수입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수출은 5.7% 증가와 수입 -7.5% 감소의 영향으로 대미 무역 흑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은 1.9% 증가, 수입은 1.2% 감소하였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하여 對미 수출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하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의 높은 FTA 활용도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수입의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국내 축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는 정상화되었다.

미국 USITC에 따르면 한·미 FTA 관세혜택에 의한 대미 수출 증가에 따라 한국의 FTA 활용률이 상승하였다. 2013년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59% 상승하여, 우리수출기업이 FTA에 대해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한·중·일 미국시장에서의 격화

한·미 FTA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미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역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경제발전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대 미국 수출금액이 1,960억(2004년)에서 4,277억(2013년 예상)으로 약 118%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60억(2004년)에서 630억(2013년 예상)으로 동기간 36.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아베노믹스¹⁶⁾로 불리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엔화약세를 초래하여 미국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의 FTA 효과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단순히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아선 안되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여야 한다.

3) 단계적 철폐 물품의 FTA 자원 강화

한·미 FTA 양허품목 중 화물자동차(제8704호), 남성용 셔츠(제6105호), 플라스틱 판(제3920호) 등의 품목은 발효 10년차인 2021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에서 고세율 또는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FTA의 효과도 더디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관세 단계철폐 품목과 관련된 국내 수출자들은 보다 장기적으로 FTA 활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당 물품의 관세가 아직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특혜활용이 낮은 것을 기회로 원산지 규정의 충족, 서류보관, 미국내 바이어 물색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16) 일본의 경기 회복,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 [네이버 지식백과] 아베노믹스 [Abenomic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TPP와 한·미 FTA

TPP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TPP협정을 주도하여 왔으며 일본의 아베내각 출범이후 참가의사를 표명하였고 4월 20일 협상 참여를 참가국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하였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7월 1차 협상을 마무리 하였으며 11월 11일 2차 협상을 종료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TTIP 타결시 EU는 1,200억 유로, 미국은 90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¹⁷⁾

일본의 TPP 참가, 미국과 EU의 TTIP 추진 등 이제는 미국시장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기타 다른 경쟁국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만큼, 한·미 FTA로 인한 시장선점효과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

미국은 발효 2년차이니만큼 원산지 검증에도 적극적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관세청은 지난 6월 국내 60여개 수출대기업에 원산지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산지검증의 시기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다른 협정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인 '순원가법'을 정하고 있어 동 규정을 활용한 업체의 경우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순원가법은 비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등 관련 제비용을 모두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FTA 원산지 전문가 육성, 서류보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도 FTA 활용과 더불어 검증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홍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17)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2013)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일반기계 산업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일반기계 산업

권민경(국제원산지정보원 주임연구원)

- 분석 배경 : 일반기계 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자본재 산업의 핵심이 되는 건설기계, 공작기계, 냉동공조기계, 금형, 농기계, 섬유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생산장비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한다. 이처럼 일반기계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의 핵심기반으로서 수출산업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계류 전반이 부품소재,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과정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산업의 FTA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반기계 산업의 FTA 이행현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분석 범위 : 일반기계산업¹⁸⁾

1. 기계산업의 교역동향

1) 기계산업 교역동향

‘12년 기계류 對세계 수출 1,651억 달러, 수입 628억 달러로 무역수지 1,023억 달러 흑자 기록

2012년 우리나라의 기계류¹⁹⁾ 對세계 수출은 1,651억 달러, 수입은 62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02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기계류(MTI 1단위 기준)는 수출의 약 43.4%, 수입의 약 16.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규모가 매우 크다.

2012년 기계류의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은 765억 달러, 수입은 359억 달러였다.

2010년 기계류의 對FTA 체결국 수출 비중은 44.4%, 2012년에는 46.3%로 소폭 증가하였다. 수입 비중 역시 2010년 55%에서 2012년 57.2%로 확대되었다.

2) 수출

‘12년 일반기계 산업 對세계 수출 479억 달러로 FTA체결국 9% 증가, 비체결국 2% 증가

우리나라 기계류의 2012년 對세계수출액은 1,651억 달러로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감소하였는데, FTA 체결국으로는 7%, 비체결국으로는 11% 감소하였다. 기계류의 수출 감소폭이 비체결국에 비해 FTA 체결국이 다소 적은 것은 2011년 이후 기계류의 주요 수출시장인 EU와 미국의 FTA 발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표 4-1 | 우리나라 기계류의 수출입 현황(2010 - 2012)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			수입		
	對세계	對FTA	FTA 점유율 ²⁰⁾	對세계	對FTA	FTA 점유율
2010	1,454	645	44.4%	604	332	55.0%
2011	1,770	774	43.7%	648	359	55.4%
2012	1,651	765	46.3%	628	359	57.2%

18) 본 글에서 일반기계 산업은 MTI 2단위 기준으로 수송기계와 정밀기계를 제외한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79(기타기계)를 말한다.

19) 기계류는 기계산업 전체를 의미하고 일반 기계산업은 기계류 중에서 수송기계 및 정밀기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20) FTA 점유율은 對세계 수출(입) 실적 중 FTA 국가(당해년 발효 기준)로의 수출(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기계류 중에서도 일반기계 산업의 경우 2012년 對세계 수출이 479억 달러로 5%증가하였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대비 9% 증가한 반면 비체결국으로는 287억으로 전년대비 2% 증가에 그쳐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과 비체결국으로의 증가율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FTA 체결국인 미국의 경우 전년대비 70%, 인도네시아의 경우 265% 증가하여 FTA체결국으로의 수출증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일반기계 산업의 국가별 수출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 산업 수출 상위 10대국가는 [표 4-2]와 같다.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 순으로 상위 10위 가운데 FTA 체결국은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계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미국이고 이외에 중양아시아 국가 및 아시아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EU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계산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부품소재,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림 4-1 | 기계류와 일반기계의 수출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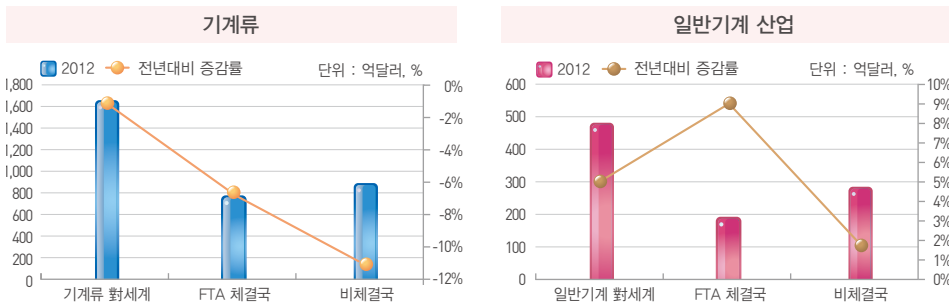


표 4-2 | 일반기계의 상위 10대 수출국(2012)

순위	국가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9,388,632	11,011,038	17
2	미국	3,938,683	6,680,043	70
3	일본	2,449,742	2,920,333	19
4	사우디아라비아	1,069,448	2,500,732	134
5	인도	1,287,419	1,830,194	42
6	러시아 연방	610,461	1,386,150	127
7	인도네시아	339,910	1,240,490	265
8	이란	473,089	1,121,315	137
9	아랍에미리트 연합	599,931	1,081,512	80
10	태국	510,012	1,070,574	110
	기타	25,149,389	17,071,814	-32
	총계	45,816,716	47,914,195	5

FTA 체결국으로 일반기계 수출은 미국이 35%, 아세안이 27%, EU가 24%로 3개 FTA가 86%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 인도 9%, 싱가포르 3%, 페루 1%, 칠레 1% 등으로 나타난다. 비체결국으로의 일반기계 수출은 중국 38%, 일본 10%, 사우디아라비아 9%로 나타났다. 일반기계의 수출국 분포의 특징은 중간재에 해당하는 일반기계는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수출되고 있고, 최종재에 해당하는 일반기계의 수출은 미국, EU, 중앙아시아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는 FTA체결국과 비체결국 모두 공통되는데 일반기계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등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네트워크가 다각화되면서 집중적인 생산과 교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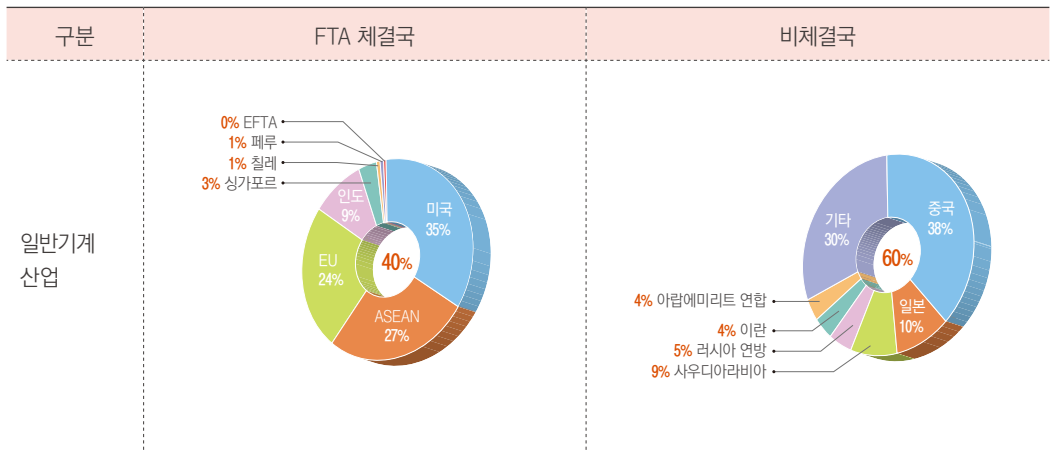
'12년 일반기계 산업 對세계 수입 319억 달러, FTA체결국 수입액 4% 증가, 비체결국 2% 감소

2012년 기계류의 對세계 수입액은 604억 달러로 전년대비 7%감소하였다. FTA 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319억 달러로 전년과 동일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비체결국 수입액은 245억달러로 전년대비 15%의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기계류 수입은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관세혜택을 누릴수 있는 FTA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일반기계 산업의 경우도 비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그림 4-2 | 일반기계 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20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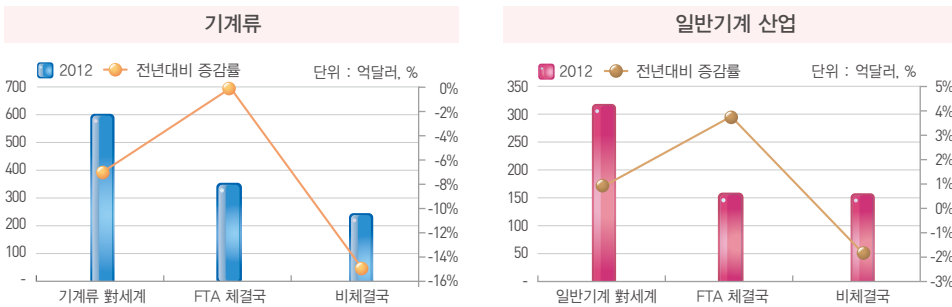
주 : 동그라미 안의 수치는 전체수출에서 FTA 체결국/비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기계의 對세계 수입액은 3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증가하였고, FTA 체결국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대비 4%증가한 반면 비체결국은 160억 달러로 2% 감소하였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기계 상위 10대 수입국은 아래 [표 4-3]으로 나타내었다.

기계산업은 기술력에 따른 차별화가 두드러진 산업으로 고도의 기술 중심의 제품은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부품이나 중간재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 주요 수입국은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상위 10위 안에 FTA 체결국인 독일,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7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림 4-3 | 기계류와 일반기계의 수입현황(2012)



| 표 4-3 | 일반기계의 상위 10대 수입국(2012)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증감률
1	일본	10,238,862	9,625,305	-6
2	중국	4,965,569	5,306,033	7
3	독일	4,162,254	4,029,207	-3
4	미국	4,085,186	4,009,123	-2
5	이탈리아	1,059,029	1,179,688	11
6	노르웨이	896,920	1,170,763	31
7	프랑스	781,090	793,266	2
8	대만	620,920	589,726	-5
9	영국	566,596	589,394	4
10	스위스	711,299	583,786	-18
	기타	3,579,063	4,075,006	14
	총계	31,666,788	31,951,297	1

일반기계의 수입국 분포를 검토해 보면 수출국과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 일반기계의 수출은 주로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국의 분포는 일본, 미국, EU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일반기계류와 수입하는 일반기계류의 품목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기계의 수입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이 동등하게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일반기계 수입은 일본 60%, 중국 33%, 대만4%로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일반기계 수입은 EU 56%, 미국 25%, EFTA 11%이다. 비체결 국가는 일본에, FTA 체결국은 EU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II. 일반기계의 세부 품목별 교역동향

e 나라지표의 동향에²¹⁾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기계 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2000년 대비 세계시장에서 수출·수입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수출 점유율은 1.7%에서 3.4%로 상승하였고, 수입 점유율은 2.5%에서 3.1%로 상승하였다. 수출과 수입 점유율을 합친 교역규모에서의 점유율도 2.1%에서 3.2%로 상승하였다. 이에 2011년 한국의 일반기계 세계 순위는 수출, 수입, 교역 모두 8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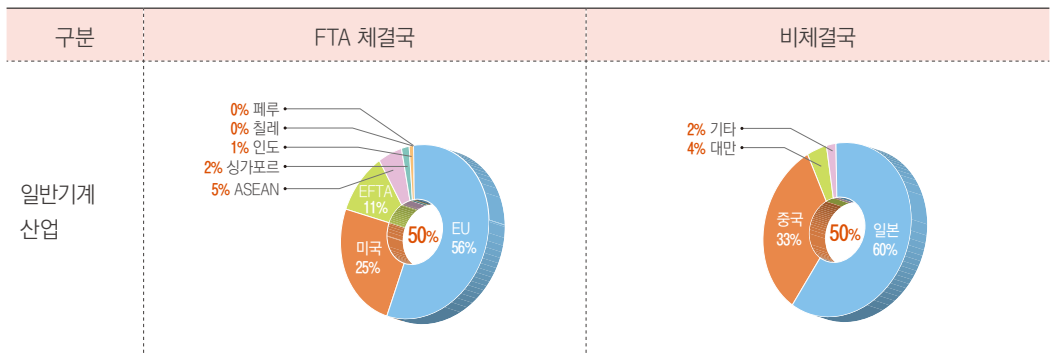
1) 수출

‘12년 일반기계 수출 상위품목 기타건설중장비 > 기타기계류 >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2012년 일반기계 산업의 수출 상위 품목은 기타건설중장비> 기타기계류>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순이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섬유기계(62%), 금속절삭가공기계(54%), 불꽃점화식내연기관(43%), 기체펌프(43%)이다. 일반기계 산업의 수출은 주로 건설 중장비와 중장비 부품에 집중되어있고 FTA 비중인 높은 품목은 섬유기계와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으로 나타난다.

| 그림 4-4 | 일반기계 산업의 국가별 수입 비중(2012)

단위 : %



주 : 동그라미 안의 수치는 전체수입에서 FTA 체결국/비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

21) 통계청은 e-나라지표 시스템을 통해 국정통계의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e-나라지표상의 일반기계산업 동향을 의미한다.

2) 수입

'12년 일반기계 산업의 수입 상위 품목은 기타광학기부품 > 기타기계류 > 밸브

2012년 일반기계 산업의 수입 상위 품목은 기타광학기부품, 기타기계류, 밸브, 기체펌프 순이다. 일반기계 산업내에서 수입 1위의 품목은 기타광학기부품으로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FTA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순위 6위의 광학렌즈 역시 수입규모는 크지만 FTA국 비중은 8%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밸브(65%), 전동축 및 기어(61%), 운반하역기계(59%), 기타기계류(55%) 등 2012년 수입상위 10대 품목중 다수가 FTA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보다 수입품목에서 FTA 체결국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 일반기계 세부품목별 수출현황(2012)

단위 : 천달러

일반기계 수출 순위	MET 6단위	세부품명	對 세계	對 FTA	FTA 비중
1	725190	기타건설중장비	4,811,691	1,918,117	40%
2	790100	기타기계류	2,961,896	940,798	32%
3	711130	불꽃점화식내연기관	2,937,823	1,257,781	43%
4	725130	건설중장비부품	2,201,787	867,570	39%
5	721100	섬유기계	2,155,804	1,338,378	62%
6	715290	기타광학기부품	2,132,260	178,862	8%
7	715210	광학렌즈	2,000,911	406,493	20%
8	723100	금속절삭가공기계	1,804,724	982,683	54%
9	751200	밸브	1,711,252	468,558	27%
10	711220	기체펌프	1,479,396	642,519	43%

표 4-5 | 일반기계 세부품목별 수입현황(2012)

단위 : 천달러

일반기계 수입 순위	MTI 6단위	세부품명	對 세계	對 FTA	FTA 비중
1	715290	기타광학기부품	2,428,835	127,708	5%
2	790100	기타기계류	2,057,778	1,136,849	55%
3	751200	밸브	1,824,696	1,178,403	65%
4	711220	기체펌프	1,352,374	612,061	45%
5	712100	운반하역기계	1,316,586	772,269	59%
6	715210	광학렌즈	1,283,108	107,037	8%
7	751500	전동축및기어	1,202,923	734,255	61%
8	723100	금속절삭가공기계	1,185,328	436,789	37%
9	711130	불꽃점화식내연기관	1,143,443	403,678	35%
10	751900	기타기계요소	1,117,105	603,946	54%

III. 일반기계 산업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1) 일반기계 FTA 특혜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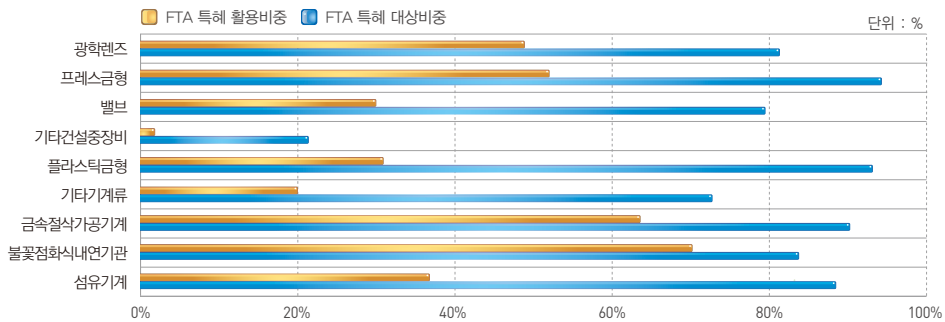
'12년 FTA 특혜 수출 상위국 EU(73.2%) > EFTA(64.9%) > 페루(51.1%) > 미국(47.7%)

2012년 일반기계 산업에서 FTA 특혜가 가능한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약 116억 달러이다. 2012년 일반기계 산업 수출품목 중 FTA 대상 수출품목²²⁾은 총 115개 품목으로 FTA국으로의 총 수출액 대비 FTA 대상품목 비중은 64.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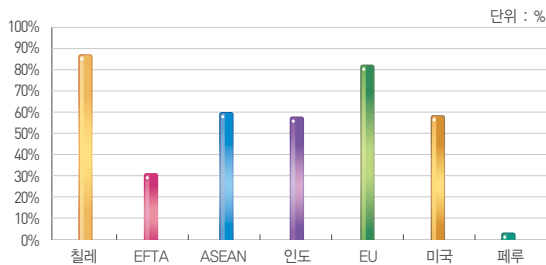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기계 1.2억 달러,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약 1억 달러, 금속절삭가공기계 0.9억 달러 등이다.

한편 일반기계의 FTA 활용수출액은 약 4.6억 달러로 40%의 다소 낮은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EU(73.2%) > EFTA(64.9%) > 페루(51.1%) > 미국(47.7%) > 칠레(37.8%) > 인도(3.4%) > 아세안(2.8)순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 비중은 특히 아시아권인 ASEAN과 인도 등에서 저조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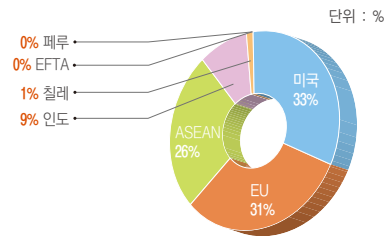
| 그림 4-5 | FTA 특혜수출대상 주요품목의 FTA 특혜대상 비중(MTI 6단위 기준)



| 그림 4-6 | 일반기계 총수출액 대비 FTA 특혜대상비중



| 그림 4-7 | FTA대상 총수출액 대비 국가별 비중



* : 對FTA 협정국 일반기계 산업 총수출액 가운데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출금액의 비중

** : 對FTA 협정국 일반기계 산업 총수출액 중 FTA 특혜 대상 총수출액의 국가별 비중

22) MTI 6단위를 기준으로 한 품목수이다.

국가별로는 다음과 같은 FTA 수출 활용 특징을 보인다.

미국 수출 일반기계의 양허수준 낮은편

미국은 일반기계 'FTA 대상 총 수출액'의 약 33%를 점유하고 있다. 대미 일반기계 총수출액 대비 FTA 특혜대상이 되는 비중은 58%를 차지하고 FTA 활용비율은 약 48%로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반기계 산업의 품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반기계 중 1/3은 FTA 특혜의 대상이 되는 품목군, 1/3은 특혜 대상 비중이 평균 50%이하인 품목군, 1/3은 양허제외로서 FTA 특혜가 불가능한 품목군이 분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기계류의 양허수준이 낮고 더불어 FTA 활용비율도 50%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일반기계류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의한 다품목 소량생산이 많은 산업적 특징으로 인해 원산지관리 대응이 조직적이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EU 수출 일반기계 FTA 활용수준 가장 높아

EU는 'FTA 대상 총 수출액'의 약 31%를 점유하고 있다. EU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기계 품목이 양허품목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FTA 특혜대상 품목의 비중도 약 82%로 높고 FTA 활용비율도 73%로 다른 협정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기계 산업의 주요 수출국인 EU와 미국은 수출되는 품목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FTA 활용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양허수준 및 활용수준이 낮은 반면 EU는 양허수준과 활용수준이 모두 높다. 특히 EU는 FTA 활용수준이 여타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EU FTA상의 인증수출자 제도의 긍정적 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기계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개별기업이 품목별로 원산지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제도가 없는 다른 협정과 달리 EU의 경우 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도 원산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ASEAN 수출 FTA 주요 활용품목은 건설중장비 및 운반하역기계 중심

ASEAN은 'FTA 대상 총 수출액'의 약 29%를 점유하고 있다. ASEAN은 일부품목에 대하여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국가별로 개방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반기계류에 대한 양허수준이 높은 편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기술수준 상 일반기계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산업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ASEAN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심으로, 품목별로는 기타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기타기계류가 FTA 활용의 주를 이룬다. 다만 일본의 적극적 해외 투자가 이뤄진 태국의 경우에는 금형기계나 금속절삭기계 등의 수출규모가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일반기계 FTA 특혜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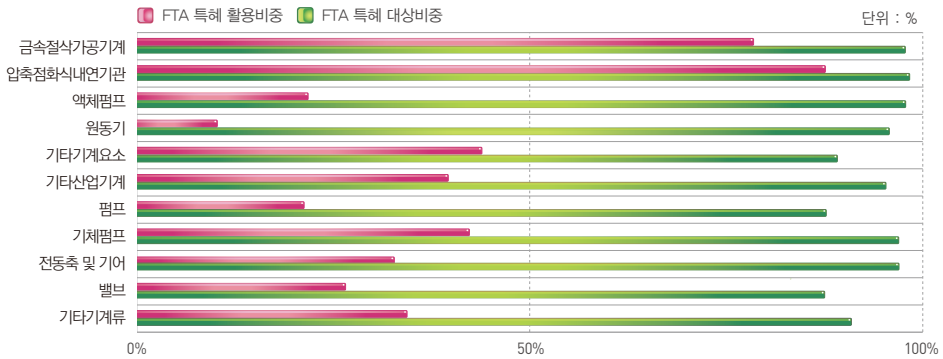
'12년 FTA 특혜 수입 상위국 EU(60%) > ASEAN(53%) > 칠레(43%) > 인도(42%)

2012년 일반기계 총수입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약 13.4억 달러이다. FTA 대상 수입품목²³⁾은 총 125개 품목이고 FTA 국가로 부터의 총수입액 대비 FTA 대상품목은 86%의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특혜 대상 수입품목은 기타기계류 1억 달러, 밸브 약 1억 달러, 전동축 및 기어 0.7억 달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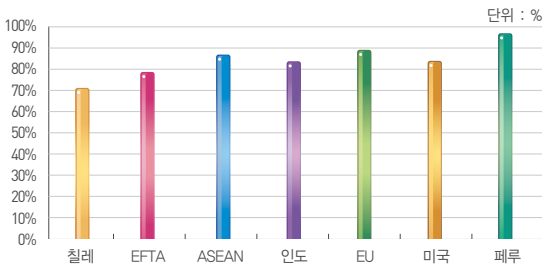
FTA 활용수입액은 약 6.5억 달러로 49%의 활용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EU(60%) > ASEAN(53%) > 칠레(43%) > 인도(42%) > 미국(30%) > EFTA(29%) > 페루(0%)순으로 조사되었다. FTA 활용 수입비중은 미국과 EFTA 등에서 저조하게 나타났다.

세부품목별로(MTI 6단위 기준) FTA 특혜수입 상위 품목들은 평균 90%이상이 특혜 혜택이 가능한 품목들로 FTA 활용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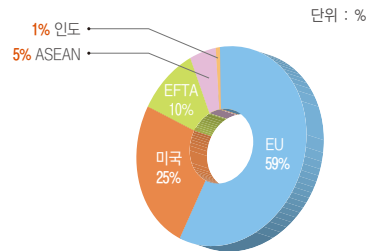
| 그림 4-8 | FTA 특혜수입대상 주요품목의 FTA 특혜활용 비중(MTI 6단위 기준)



| 그림 4-9 | 일반기계 총수입액 대비 FTA 특혜대상비중



| 그림 4-10 | FTA 대상 총수입금액 대비 협정별 비중



* : 對FTA 협정국 자동차산업 총수입액 가운데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의 비중

** : 對FTA 협정국 자동차산업 총수입금액 중 FTA 특혜대상총수입액의 국가별 비중

23) MTI 6단위를 기준으로 한 품목수이다.

그러나 품목별로 활용비중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과 금속절삭 가공기계의 경우 활용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원동기나 펌프의 경우에는 활용비중이 매우 낮아 활용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수입국의 차이 때문인데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은 EU 중심으로, 활용비중이 낮은 품목은 미국에서만 수입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다음과 같은 FTA 수입 활용 특징을 보인다.

2012년 일반기계류 'FTA대상 총수입액' 13.4억달러의 약 59%인 7.9억달러가 EU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로부터 수입되는 일반기계의 특혜수입 비중도 60%로 협정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EU로부터 수입되는 FTA 특혜대상 세부 품목은 밸브(0.65억달러) > 전동축 및 기어(0.54억달러) > 기타기계류(0.52억달러) 등이다. EU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은 중간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계부문의 수입구조가 완제품의 수출증가와 핵심부품의 수입확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對미국 일반기계 수입은 약 3.3억달러로 'FTA대상 총 수입액' 가운데 약 25%를 점유하여 EU 다음이다. 對미국 FTA대상 품목의 비중은 84%로 높은 수준이지만 활용비중은 30%로 매우 낮다. 미국으로부터의 FTA 특혜대상 세부 품목은 펌프(0.56억달러) > 원동기(0.54억달러) > 밸브(0.3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EFTA로부터의 FTA대상 일반기계의 수입규모는 협정국 내에서 약 10%, 아세안은 5%를 차지하고 그 외 국가들은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협정국 별로 수입되는 일반기계는 수입국에 따라 다른 유형을 띠고 있는데 EU로부터는 내연기관 및 터빈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는 펌프 및 원동기 중심, 아세안으로부터는 기초 공작기계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다. 기계산업이 국가별로 기술력의 편차가 큰 것이 FTA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반기계 산업의 특징과 FTA 활용 상관관계

계층적 산업조직 형태로 제조공정별 분업화 형성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징

일반기계 산업은 B2B산업으로 전방 연관효과가 크고,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기 때문에 후방연관효과도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기계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특히 높은 편이다.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품을 가공하여 조립이 필요한 계층적 산업조직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조공정별 분업화가 요구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기계의 수요는 전자, 일반기계 산업자체,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등 4대 산업으로 이들 산업이 전방산업에 속한다. 일반기계 수요 중 4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이다.²⁴⁾

24) 산업연구원, 기계산업의국제경쟁력 분석과 전략적 발전방안, 2012

일반기계 산업의 후방구조는 베어링 등 요소부품, 내연기관, 열교환기 등 관련 부품소재 부문의 1, 2차 협력업체와 핵심 부품에 대한 해외공급 업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내 1, 2차 협력업체가 아닌 해외 공급 핵심 부품은 건설기계 엔진, 공작기계의 CNC 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일반기계 산업은 부품과 최종제품의 사슬구조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각 부품이 원산지재료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타의 산업보다 강한 가치사슬의 산업구조가 원산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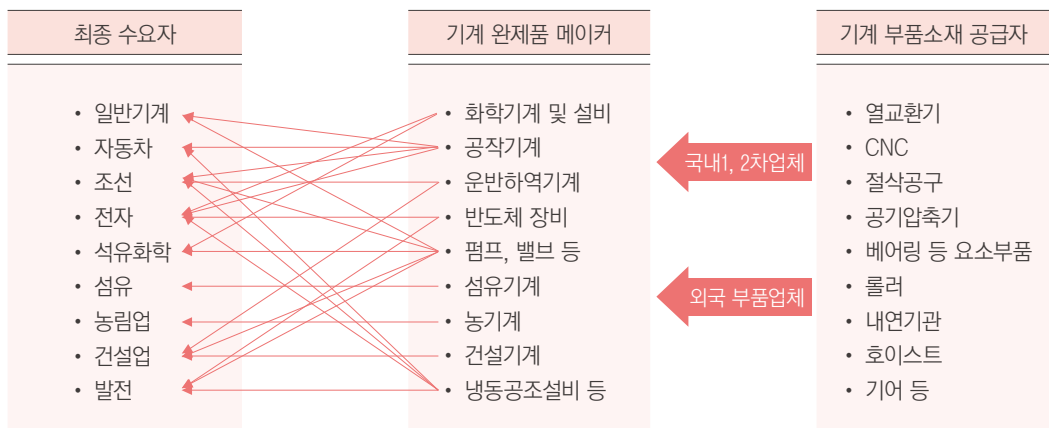
특히 자동차나 전자전기와 같은 우리나라 수출주력 상품의 FTA 활용 확대를 꾀함에 있어,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일반기계 산업과 계열화를 이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산지 결정의 협력관계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중간재 및 최종재의 FTA 활용 관계 검토

일반적으로는 기계의 기능에 따라 품목들을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기계 산업이 전후방 산업과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특징에 따라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기계 산업에 속하는 품목들을 용도에 따라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로 분류 할 수 있다.

중간재는 단일제품으로는 기능하지 못하는 부품류이고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등을 포함한다. 자본재는 타 산업의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마더머신(mother machine)으로 불리는 공작기계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재는 기계 중에서도 하나의 모델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건설기계, 농기계 등을 말한다.

| 그림 4-11 |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수급구조



자료: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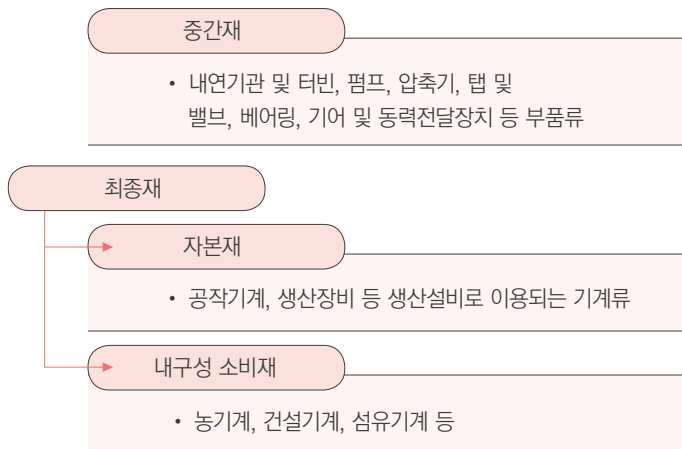
일반기계는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중간재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재료와 상품간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을 바탕으로 재료와 상품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과 FTA 활용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토결과 중간재와 최종재의 원산지결정기준 분포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간재의 경우 대체로 원산지결정기준이 간단한 반면에 최종재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협정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에는 최종재 기계류에 대해 59개의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확인되어 가장 복잡한 모습을 보였다.

최종재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중간재보다 복잡한 것은 부품의 구성수가 많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재료' 일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에는 동일세번 내에서도 특정한 물품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협정보다 더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 4-12 |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중간재 및 최종재 구분분류



자료: 산업연구원

표 4-6 | 일반기계의 원산지결정기준 분포²⁵⁾

단위: 개수

구분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중간재	3	2	2	4	2	2	14
최종재	33	23	12	11	18	9	59

자료: 연구자 작성

25) 협정별 중간재와 최종재를 구분한 후 각 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카운팅하였다. 다만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은 1개로 카운팅하여 중복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과 FTA 활용의 상관관계를 볼 때 한·미 FTA의 활용현황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미 FTA 활용률이 유사품목을 수출입하는 EU와 비교하였을 때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금속공작기계: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한·미 FTA 활용 EU보다 낮은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일반기계는 건설기계와 공작기계이다. 건설기계는 소수업체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상위기업이 전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FTA 관세혜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작기계는 산업집중도가 낮고 글로벌 1위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내외에 불과하여 수요자의 개별 맞춤이 중요하다. 또한 건설기계와는 달리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 모두 FTA 관세특혜가 있어 FTA 활용가능성이 높다.

금속공작기계의 EU와 미국의 FTA 활용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금속공작기계에 대하여 협정간의 활용비중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한·EU FTA의 경우 단일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 판단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조항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 표 4-7 | 중간재 및 최종재의 FTA 특혜활용 비중

단위 : %

수출	구분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미	한·페루
	중간재	55	44	5	4	70	47	36
최종재	35	69	2	3	74	48	68	
수입	구분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미	한·페루
	중간재	0	15	53	44	51	22	0
최종재	45	37	53	40	66	35	0	

자료: 연구자 작성

| 표 4-8 | 금속공작기계의 원산지결정기준과 FTA 수출 활용비중

구분	한·EU	한·미
FTA 활용비중	86%	60%
PSR ²⁶⁾	CTH or MC45	CTH + BD 60 CTH + BD 55 CTH + BU35/BD 45

26)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더불어 한·미 FTA의 부가가치기준의 평균적 수준인 BU35%/ BD 45% 보다 훨씬 엄격한 BD 55~60%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속공작기계의 한·미 FTA 활용비중이 EU보다 저조한 것은 매우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IV. 시사점 및 활용방안

협력사의 FTA 원산지관리 인식확대 필요

기계산업의 전반적인 가치사슬은 기초연구에서 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로부터 생산 및 조립 그리고 판매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치창출 과정에서 수요업체, 완제품업체, 하청 및 부품업체와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산업과 긴밀한 상호협력의 필요하며, 수요산업내 집중도 및 주요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수직통합 정도, 인증 및 신뢰성 검증 요구 등의 영향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분업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대기업만 원산지 관리를 해서는 FTA를 활용할 수가 없다. FTA 원산지결정은 완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사슬의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제품 생산에 관련된 1차, 2차 등 하위 협력 업체들의 원산지관리능력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하위 협력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판매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FTA 특혜를 체감할 수 없어 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협력사들의 경영진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협력사들의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정부 및 유관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FTA 원산지관리 협력구조 생성을 통한 기업간 동반성장 도모

기계산업 분야는 전후방 산업과의 연결성이 매우 견고하다. 일반기계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전기산업의 핵심 기초 원재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반기계 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의 FTA 활용의 수준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기계 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어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의 한계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어렵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사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지원, 원산지시스템의 보급, 사후검증 대응 등과 같은 원산지관리 협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수준의 기초단계로 향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구조가 반영된 중장기적 관점의 원산지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원산지관리 지원과 원산지관리 성공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원산지 관리 및 서비스역량 확충을 통해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

코트라의 최근 미국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공작기계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대만, 이탈리아 다음으로 대미수출 5위 국가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측 바이어의 의견조사 결과 한국산 공작기계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산 공작기계의 품질은 세계시장 최고 점유율을 차지하는 일본산 제품과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 가격은 약 10~1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저가의 중국산 기계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산 공작기계의 가격은 한국산 보다 약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작기계의 경우 한·미 FTA 발효이후 4.2%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면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미 FTA 활용을 통해 일본산 제품과 충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작기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미국 바이어에 따르면 아직 미국 시장에서 일본 및 독일 등의 선진 기업들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수준이 낮으므로 지속적인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향상이 필요하고, 기술지원과 부품 수급 서비스 지원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 부품제조 기업을 위한 통합적 품목분류 지원

일반기계 산업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세번 변경기준의 분포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단위(2,4,6 단위)에서 변경이 있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보편적 원산지결정기준이다.

기계산업의 계층적 산업구조와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다수분포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품목분류의 정확성'이 원산지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기계산업에서는 부품의 교체에 따라 세번의 경합이 발생하기도 하고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불일치 등에 따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른 산업에 비해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기계산업에 포함되는 품목수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하위 업체들의 경우 품목분류의 개념이 생소하여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품별 품목분류 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방산업에 사용되는 1차, 2차 하위업체들의 부품들을 원산지판리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통합적 품목분류 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집: 국제원산지정보원 주관 『제5회 FTA전문가포럼』 주요내용

진병진(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 김기영)은 지난 11월 22일(금)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FTA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제5회 FTA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다.

『무역증진을 위한 FTA활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의 FTA추진정책이 양적인 확장에 집중해 온 반면, 앞으로는 FTA의 실질적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FTA이행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FTA전문가포럼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오원석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3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날 발표되고 논의된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Session I : 미국 FTA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판례분석과 시사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는 ‘미국 FTA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판례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발표에 앞서 그는 주제 선정의 이유와 연구의 목적에 대해 “FTA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많은 정부기관과 경제단체들이 FTA의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FTA의 핵심인 원산지규정의 이행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지원이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FTA의 성공적 정착과 이행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장근호 교수는 미국 법원의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7건의 시사성 높은 판례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FTA특혜관세의 사후신청기한은 1년으로 제한

FTA특혜관세의 사후신청과 관련하여 제록스(Xerox), 코프로(Corpro), 포드(Ford) 등이 제기한 소송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 내에서 FTA특혜관세의 사후신청기한은 엄격하게 1년으로 제한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기한 역시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특혜신청에 대해 세관이 특혜 적용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 제기가 불가능하며, 기한 내에 특혜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복청구는 가능하나 적법한 특혜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입신고 당시 세관지침의 오류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기한 경과 후 FTA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1년의 기한 이내에 특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사례를 소개하였다.

■ 증빙서류가 일관되지 않으면 특혜관세 적용 부인

이어서 소개된 사례는 미국이 FTA를 시행하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분야인 섬유 및 의류산업에서 제기된 소송결과들로, 특혜관세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의 범위와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권한 인정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결정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날 소개된 판례는 홀포드(Holfold)와 폴리 USA(Polly USA) 두 회사와 미국 관세당국 간의 소송결과로 이들 회사는 특혜관세 수혜가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원산지규정 충족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고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가 질적·양적으로 불충분할 경우 특혜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은 세관에게 있음을 미국 법원이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중대한 허위신고와 과실은 엄격히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처리

마지막으로 장근호 교수는 미국 내 의류회사인 팁 탑 팬츠(Tip Top Pants)와 골든 쉽 트레이딩(Golden Ship Trading)의 사례를 통해 중대한 허위신고와 과실이 있을 경우, 미국 법원은 엄격하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허위신고 사실을 세관이 입증할 경우 수입자는 신고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 교수의 발표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한홍렬 교수는 “미국 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자의 시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원산지규정에서 미국의 국제무역재판소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점차 복잡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연구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미국 법원의 판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강릉원주대학교 박형래 교수는 “앞으로 우리 기업과 관세당국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고, 이의 한 방편으로 FTA특혜 활용의 근간이 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ession II : 한·중 FTA 2단계 협상대응을 위한 對중국 주요산업 원산지기준 설정방향 고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세청 안병옥 FTA집행기획담당관이 '한·중 FTA 2단계 협상대응을 위한 對중국 주요산업 원산지기준 설정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동 주제는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이자 국가 전체 무역수지흑자의 2배를 상회하는 흑자가 시현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가지는 의의와 향후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필수 고려사항인 주요 교역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설정방향을 고찰해 보자는 취지로 다루어졌다.

안병옥 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통해 소개한 한·중 FTA의 의의와 향후 2단계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對중국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설정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중 FTA는 FTA교역 허브가 되기 위한 교두보이자 한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 기회

안병옥 담당관은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 및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로 향후 한·중 FTA까지 체결되게 되면 명실상부한 FTA허브국으로 도약하게 되어 교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효 후 5년차에 0.95~1.25%, 10년차에 2.28~3.04%에 이르는 실질 GDP 증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한·중 FTA가 체결되게 되면 중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관세인하로 중간재 및 최종 소비재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의 양적 확대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인 아세안(ASEAN)권 기업과 대만 소재 기업이 누리고 있는 FTA활용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 현재의 경쟁력 저하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표 4-9 | 한·중 FTA 개방 수준에 따른 영향

양허 시나리오*	발효후 5년			발효후 10년		
	GDP(%)	후생(억불)	고용(천명)	GDP(%)	후생(억불)	고용(천명)
낮은 수준	0.95	176.5	187.5	2.28	275.9	244.4
높은 수준	1.25	233.3	247.3	3.04	365.8	325.6

주 : 낮은 수준은 농업분야 10%, 제조업분야 10%를 각각 유보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높은 수준은 쌀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전면개방 할 경우를 가정한 수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2년 5월)

■ 상품양허 수준을 중심으로 한 한·중 FTA 1단계 협상결과는 성공적

이어서 이미 완료된 한·중 FTA의 1단계 협상 결과를 상품양허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는데, 먼저 품목군의 구분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민감품목·초민감품목의 3가지로 구분하고 품목군별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소개하였다.

상품양허 수준에 대해서는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²⁷⁾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대해 관세철폐를하기로 일차 합의하였고, 추후 협상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합의내용이 기준에 중국이 체결한 FTA중 가장 높은 양허율을 보이는 스위스(84.2%)보다 월등히 높아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수준으로 합의됨으로써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설명하였다.

■ 주요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설정은 신중해야

다만, FTA체결 직후부터 폭 넓은 상품양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심화로 수출입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산업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對중국 주요 교역품목 6개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설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안병욱 담당관이 원산지결정기준 설정의 방법으로 적용한 기법은 각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과 활용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여기에 중국이 기 체결중인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가 제안한 주요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설정방향을 아래의 [표 4-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 4-10 | 주요 교역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설정방향

품 명	설 정 방 향
전기·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제품은 품목분류의 특성상 완제품과 부품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중국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설정 시 부품 수입비율이 높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 • 따라서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설정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
화학공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은 전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의 적용도 동시 고려 필요 • 또한 중국에 비해 기술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공정기준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7) HS 2012 기준으로 10단위 품목의 개수인 12,232개의 90%에 해당하는 약 10,800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합의하였다.

품 명	설 정 방 향
철강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입장에서는 기 체결방식대로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열연기준 완성품의 55% 수준에 달할 정도로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 절대적으로 유리
기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은 기 체결방식대로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임을 고려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추가해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차) 중국내에 있는 글로벌기업의 완성차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내부가가치 발생 비율 50% 이상의 엄격한 부가가치기준으로 설정 필요 (부품) 수출업체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충족이 어려운 조합기준 보다는 선택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설정하되,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재료와 제품의 4단위가 동일한 품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섬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직물을 제외하고 전체 품목이 중국에 다소 열세인 상황으로 특히 섬유사가 부족한 우리는 의류제품에 대해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도입 필요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류업계의 중국내 임가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원산지결정기준 협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의 우위를 활용할 필요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안병옥 담당관은 원산지결정기준이 FTA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주로 아세안과 같은 소경제권과의 FTA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 및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을 통해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 협상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적 우위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교우위산업은 기준을 완화하고 취약산업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에게 유리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도 각 산업별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생산구조와 이익에 적합한 최적의 원산지기준을 도출하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병옥 담당관의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계명대학교 류건우 교수는 발표자의 논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중국 측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존재하고 있어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중 무역관계의 특징 상 우리 측 수출품목인 중간재에 유리한 원산지결정기준 마련에 있어 이 통계를 활용할 경우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남서울대학교 조원길 교수는 2단계 협상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앞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개시되게 되면 한반도 역외 가공 허용여부, 비관세장벽 등 통관분야에 대한 부분 등도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2단계 협상과정에서 자유화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가능한 품목수 기준보다는 수입액 기준으로 자유화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특성과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은 가능한 복잡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ession III : 기 발효 FTA의 중간재 교역현황 및 실용률 분석

마지막 세션에서는 명지대학교 조미진 교수가 198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글로벌 아웃소싱의 영향력, 다자간·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중간재 무역의 증대에 착안하여 ‘기발효 FTA의 중간재 교역현황 및 실용률²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주제선정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고 국내 FTA가 늘어나면서 중간재를 포함한 최종재 관세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분석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조미진 교수는 UN에서 활용하고 있는 BEC(Boar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HS코드와 연계하여 중간재와 최종재를 구분한 후,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FTA중 미국, 페루, 터키와의 FTA를 제외하고 2002~2011년 사이에 발효된 6개 FTA에서의 중간재 교역현황을 분석하였다고 소개하였다.

■ 중간재의 교역비중이 최종재보다 높아

분석대상인 6개 FTA협정의 수입데이터를 제조업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 교수는 중간재의 교역비중이 최종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는데, 특히 분석대상인 6개 협정 중 한·칠레 FTA의 중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고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의 경우에도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는데 이는 가공광물 등 중간재가 대부분 이들 국가(지역)들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칠레 FTA의 중간재 수입 실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인도 CEPA의 중간재 수입실용률도 높은 상황

한·칠레 FTA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재의 FTA실용률이 96.1% 수준으로 78.7%에 불과한 최종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중간재는 금속제품의 실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종재의 경우에는 1차산품의 수입실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8) 실용률은 과세대상 총 수입액 중 실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용률이 낮다는 것은 FTA특혜관세의 적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발효 직후부터 수입실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간재의 수입실용률이 최종재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하면서, 산업별로는 중간재의 경우 금속제품, 고무/화학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고 최종재는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의류/식품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소개하였다.

■ 한·아세안 FTA 2010년 이후 수입실용률 안정화 단계 진입

발효 초기인 2007년에는 매우 저조한 수입실용률을 나타내던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0년 이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업별로 볼 때 중간재는 가공광물, 고무/화학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고 최종재는 의류/식품에 대한 혜택이 매우 집중되는 가운데 가공1차산품의 실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한·아세안 FTA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중간재의 교역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입실용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낮은 수입 실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 한·EFTA FTA의 수입실용률은 중간재와 최종재에서 고르게 나타나

한·EFTA FTA는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 수입실용률이 약 46% 수준으로 비슷하게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데, 산업별로 볼 때 중간재는 가공광물, 고무/화학, 일반기계의 순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종재는 정밀기계, 일반기계, 고무/화학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EU FTA의 수입실용률에 대한 분석결과도 발표하였는데 당해 협정은 분석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 중반에 발효되어 실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자료만을 보고 판단할 때 최종재는 운송기와 일반기계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고 중간재는 고무/화학과 일반기계의 실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조미진 교수는 향후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 덧붙여 2012년도의 교역 자료와 한·미 FTA까지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미국과 EU 등 선진 경제권과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교역특징을 비교해보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재 교역의 특징뿐 아니라 중간재에 부여되는 관세 혜택이 발생시키는 파급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까지를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조 교수의 발표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김의기 고문은 “중간재와 최종재 교역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발표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실용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FTA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긍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등의 원인으로 중간재 교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전제하면서, “중간재 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FTA추진 정책이 현재까지는 양자 간 협정체결에 주력해 온 반면, 앞으로는 광역 FTA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기업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단순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FTA전문가포럼은 주요 대학의 법학·무역·경영 등 전공 교수와 주요 경제 단체, 산업별 주요 협회, FTA정책 관련 정부기관 등이 참가해 FTA 및 원산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13년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지난 12월 9일 관세청은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7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수출입 기업 임직원, 관세사, 유관협회 등 약 5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FTA 활용분야, 원산지사후검증 대응분야, 일자리 창출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사전심사를 통과한 총 14편의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에 수출입 기업들의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해 자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산업계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기업 우수사례들을 소개한다.



대상

1. 에스아이플렉스 성신여대 그녀,
SIFLEX를 만나 PCB 제국의 꿈을 펼친다!

성신여대 정수미씨는 89년도 생으로 무역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무역인이라는 꿈을 발견하였다. 기존에 무역관련 경험이 없었던 그녀는 연이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울세관에서 주관하는 FTA 교육을 통해 FTA 전문가로 성장하였고, 취업의 기회도 맞이하였다.

서울세관의 Job Matching Day 행사를 통해 에이아이플렉스(주)를 만날 수 있었고, 그녀는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7개 제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통해, 해당기업은 2013년 매출이 81% 증가하여 5,380억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에이아이플렉스는 중국이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시장확대와 베트남 공장 건설로 베트남 현지 고객사 및 신규시장 진출 추진을 꾀하였다.



최우수상

2. 한국정밀기계(주) 한·미 FTA 관세인도조건 (DDP) 활용 해외바이어 확대 모델

한국정밀기계(주)는 미국·EU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 대형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기업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수치제어식 대형선반이다. 해당품목은 2012년부터 국제 경기 악화로 수출량이 다소 감소한 상태였으나, 한·미 FTA의 발효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수출품에 대해 미국측 세관으로부터 FTA 활용 수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판정받은 뒤, 약 158억 상당의 물품을 관세인도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세 약 7억원을 감면받았다. 이를 통해 해당기업은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정밀기계의 해당 물품은 원산지 검증 대응지식이 부족하여 명백한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불충분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출자, 세관, 수입자, 수입자의 관세사 등의 재검토 의뢰 노력을 통해 최종결정을 원산지 물품으로 번복을 이끌어낸 사례다.



최우수상

3. AK&MN BioFarm(주)'FTA is the KEY!' AK&MN BioFarm(주)의 FTA 활용 성공 사례

AK&MN BioFarm(주)는 고순도 Omega-3를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아시아, 북미, EU 등 선진국에 원료의약품 원재료를 수출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주력 수출시장인 아시아 지역 매출이 감소하자 FTA를 체결한 EU, 미국 등지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EU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 건이 품목 미인증으로 파기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관세청의 도움으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통해 상대국 세번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AK&MN BioFarm의 한발 빠른 FTA 활용 능력은 경쟁기업들보다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이는 2010년 71천불이던 매출을 2012년 585천불로 증가시켜 주었다.

AK&MN BioFarm는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관세청은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면 언제라도 잡아주는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강력한 협력자가 되었다. AK&MN BioFarm에게 FTA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우수상

4. 금호에이치티(주) FTA, 어둠을 밝혀 새로운 길을 열다

금호에이치티(주)는 자동차용 램프 및 LED 제조업체이다. 최근 국내 수요가 감소하여 해외시장개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도, EU,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발효는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타사 경쟁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기회를 주었다. 금호에이치티는 FTA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조직 정비·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세관의 FTA 컨설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사전검증을 시행하였다.

한편, 금호에이치티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상대국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문제 삼으며 통관지연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과 상대국으로 영문서한을 발송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업체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FTA 수입활용을 위해 EU·부품 공급업체에 지속해서 FTA를 활용할 것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8% 관세인하의 혜택과 연간 2억원 상당의 원가절감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해당기업의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수상

5. 학산(주)FTA를 신고 Jump Up

학산(주)은 연간 약 400만 켤레 이상 신발을 생산·수출하는 글로벌 신발업체로 최근 패션·기능성 신발의 활황 및 FTA 발효 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동 기업은 한·미, 한·EU FTA 발효를 가격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FTA 활용분석, FTA 전담팀구성, 컨설팅 및 설명회 참가 등 본격적인 FTA 활용을 준비하였다.

우선 한·EU FTA를 대비해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으며, 면밀한 원가관리를 통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미 FTA 활용 신발 가이드북”, “HS-PATH FINDER”를 통해 복잡한 미국 신발의 HS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해 있던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학산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을 통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수출입 양방향 FTA 활용으로 수입시 488,883달러, 수출 시 891,200달러의 관세 인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다.



우수상

6. LG하우시스(주) 두 번 놀란가슴,
원산지시스템 개선으로 극복하다

LG하우시스(주)는 LG화학의 산업재 사업부문이 분할하여 설립된 PVC·건축장식 자재전문업체이다. 관세청의 간접검증을 통해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대리서명과 인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신고문구 등이 주요 사항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TA 원산지시스템 정합성 오류를 보완하고, 서명권자 복수 지정으로 대리서명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한 장의 Invoice에 원산지신고문구 및 소급발급일자를 기재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위기 상태에 있던 해외 고객과의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해외법인의 관세절감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LG 하우시스의 사례는 유사 형태가 있는 다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상

7. 발레오전장시스템(주) 미국의 교두보를 지켜라

발레오전장시스템(주)은 자동차용 모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기업이다. 미국 고객사(URIMAN)는 관세 절감을 위해 발레오전장시스템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다. 발레오전장시스템에서는 고객사(URIMAN)의 발급 독촉에 간략한 원산지 판정 및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서면조사) 요청을 통보받았다. 동 기업은 미국고객사가 해당기업의 유일한 미국 수출고객사이므로, 시장 및 고객보호 차원에서 미국 원산지검증의 수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FTA 시스템, SAP, ERP 등 이용가능한 모든 회사 자원을 활용하여 CBP Form 28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미국 시애틀 세관의 보완요청과 추가 통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사는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신속한 대응으로 한·미 FTA C/O 원산지검증을 성공할 수 있었으며, 미국 시장과 교두보를 지킬 수 있었다.



장려상

8. 단석산업(주) 미소적용으로 세번변경기준의 명예를 벗다

단석산업(주)은 연(鉛)산화물, 바이오디젤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한·EU FTA 품목별 인증 신청에서 세번변경 기준 충족 문제 발생을 해결한 사례이다. HS협약 개정으로 2011년 인증신청 시 제3824호가 2012년 제3826호로 신설되어 분류되었는데, 관세청에 신속하게 해당건을 문의하였다. 그 결과, 인증 이후 HS개정에 따라 HS가 달라지더라도 인증 당시 기준에 따라 품목추가 없이 개정된 HS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인증받은 품목 이외의 수출품목에 대하여 추가인증보다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의 전환을 통해 검증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CEO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원산지전담 관리인력 보강 및 사후 검증대응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시켰다.

더불어, 단석산업은 한·EU FTA에서 체득한 비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최근 발효된 미국시장을 개척하여 유럽 시장에서 부진했던 수출실적을 만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 이전까지 EU와 미국으로의 수출실적은 5,700만불이었으나, 2013년 10월 6,700만불의 수출성과를 거두어 내었다.



장려상

9. 명화공업(주) 젊은 인재, FTA 일자리 잡고(JOB GO)

명화공업(주) 울산공장은 자동차용 워터펌프와 오일펌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2012년 총 수출실적 중 對미 수출이 전체 수출금액의 87.5%를 차지하는 등 교역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 등 한·미 FTA 활용은 부족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화공업은 외부 컨설팅을 이용하는 한편, 전사적 FTA 관리체계 구축으로 FTA 활용 준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납품유형별 협력사 관리를 통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도 확보하였다. FTA 활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미 FTA 발효 후 對미 수출 80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는 등 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었다.

동 기업은, 한·미 FTA 발효전 수출은 약4백만불(39건)이었으나, 발효후에는 약11백만불(80건)로 금액기준 268%, 건수로는 205%가 증가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장려상

10. 한국광성전자(주) FTA가 불러온 FDI, 광성이 일으킬 거대한 나비효과

한국광성전자(주)는 차량·가정용 전자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체이다. 동사는 90년대 중화권(홍콩법인설립)에 진출하여 홍콩 증시 전자부문에 국내기업 최초로 상장하는 등 외국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면서, 국내의 FTA 활용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했고, 비용 문제로 시스템 구축 도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원산지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하여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동사는 관세청의 ERP와 FTA-PASS 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시급했던 시스템 구축을 무료로 해결하였으며, 약 한달간 진행된 민간전문가의 FTA 지원 컨설팅으로 모든 FTA 인프라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세관담당자, 부서장, 관세청장에 이르는 릴레이 기업방문으로 조직 관심이 FTA로 집중될 수 있었다. FTA는 한국광성전자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동사가 국내로 U-Turn한 것만으로 150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연간 40억), 고객사 수출 증대(발주량 30% 증가)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05

FTA 교역지도

무역수지 흑자·적자 품목
(2013년 1분기 ~ 3분기)



무역수지 흑자 품목 2013년 1분기 ~ 3분기

- 분석 배경** : 2013년 1분기~3분기의 무역수지 흑자·적자 품목은 흑자품목은 기계, 조선 등의 중공업, 적자 품목은 광물성 연료 등의 원자재와 곡물 등의 소비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품목이 FTA국에서의 교역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세부품목(HS 4단위)을 통해 흑자품목은 수출실적 상위품목을, 적자품목은 수입실적 상위품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주요 대상** : 수출 (전기기기, 선박, 광학기기, 플라스틱, 철강제품, 유기화합물, 고무제품 등) 수입 (광물성 연료, 광석, 곡물, 화학공업품, 알루미늄, 의약품, 의류 등)

| 흑자 품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HS 2단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85	전기기기와 그부분품	99,177	52,888	46,289
2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차량	52,517	7,522	44,995
3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26,552	1,380	25,172
4	39	플라스틱 및 그제품	23,263	7,995	15,267
5	90	광학기기	26,790	12,680	14,111
6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4,127	35,019	9,108
7	29	유기화합물	18,693	10,800	7,892
8	40	고무와 그제품	6,384	2,348	4,036
9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3,033	84	2,950
10	73	철강의 제품	8,208	6,261	1,947

무역수지 적자 품목 2013년 1분기 ~ 3분기

| 적자 품목 |

[단위:백만달러]

구분	HS 2단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27	광물성연료	40,685	134,644	-93,958
2	26	광슬랙,회	113	12,246	-12,133
3	10	곡물	3	3,559	-3,556
4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560	5,412	-2,852
5	62	의류	703	3,278	-2,575
6	76	알루미늄과 그제품	1,961	4,281	-2,320
7	30	의료용품	871	3,148	-2,277
8	44	목재와 그제품 및 목탄	73	2,088	-2,015
9	28	무기화학품	2,285	4,280	-1,995
10	2	육류	35	1,994	-1,959

수출 전기기기와 그부분품

해당품목 ■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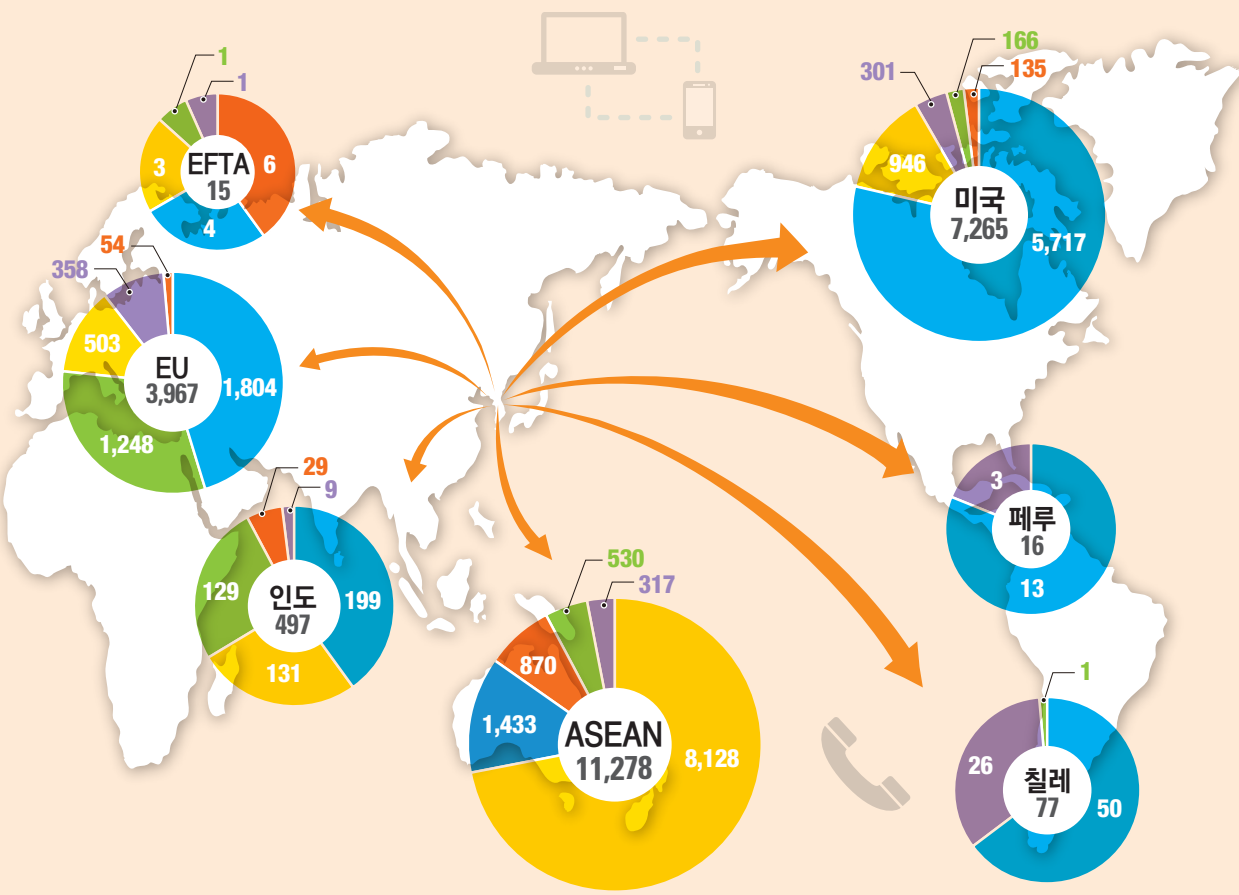
■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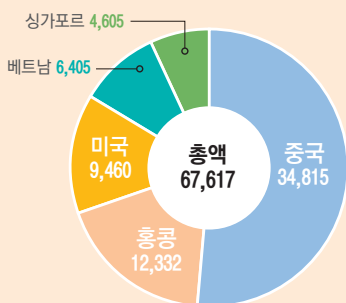
■ 8534 인쇄회로

■ 8542 전자집적회로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전기기기와 그부분품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 전기기기와 그부분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8507	1,015	103	912
2	8517	9,220	963	8,257
3	8529	2,075	267	1,808
4	8534	1,094	88	1,006
5	8542	9,711	8,542	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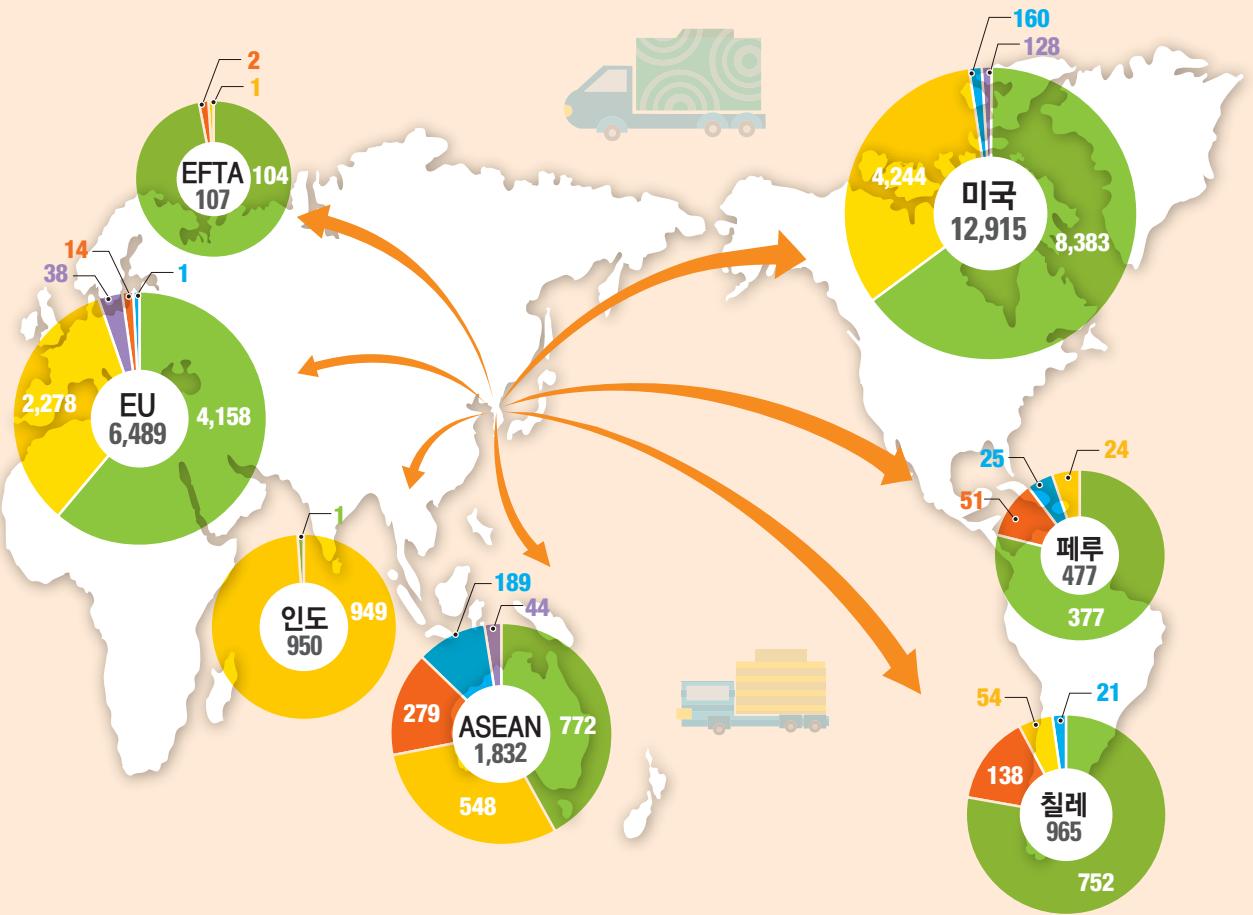
수출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해당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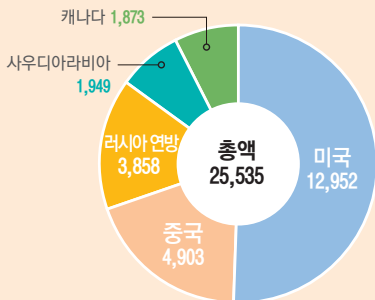
-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 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8704 화물자동차
-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 (2013.1분기~3분기) |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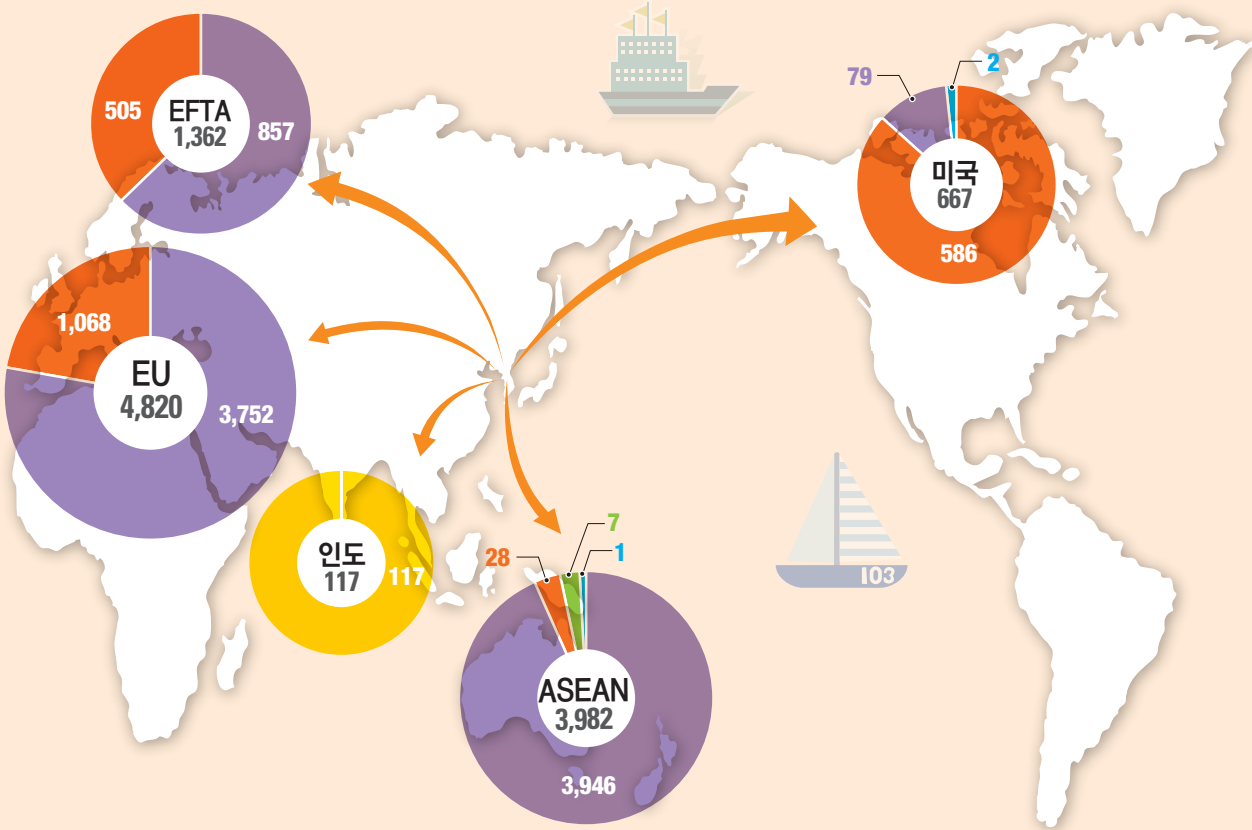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8701	210	175	35
2	8702	396	9	387
3	8703	14,547	3,230	11,317
4	8704	484	130	354
5	8708	8,098	1,028	7,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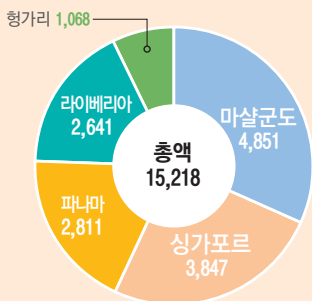
수출 선박과 수상구조물

- 해당품목**
-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 8903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8904 예인선과 푸셔 크라프트
 - 8905 조영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解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 8906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선박과 수상구조물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 선박과 수상구조물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8901	8,634	84	8,550
2	8903	3	10	-7
3	8904	7	4	3
4	8905	2,187	16	2,171
5	8906	117	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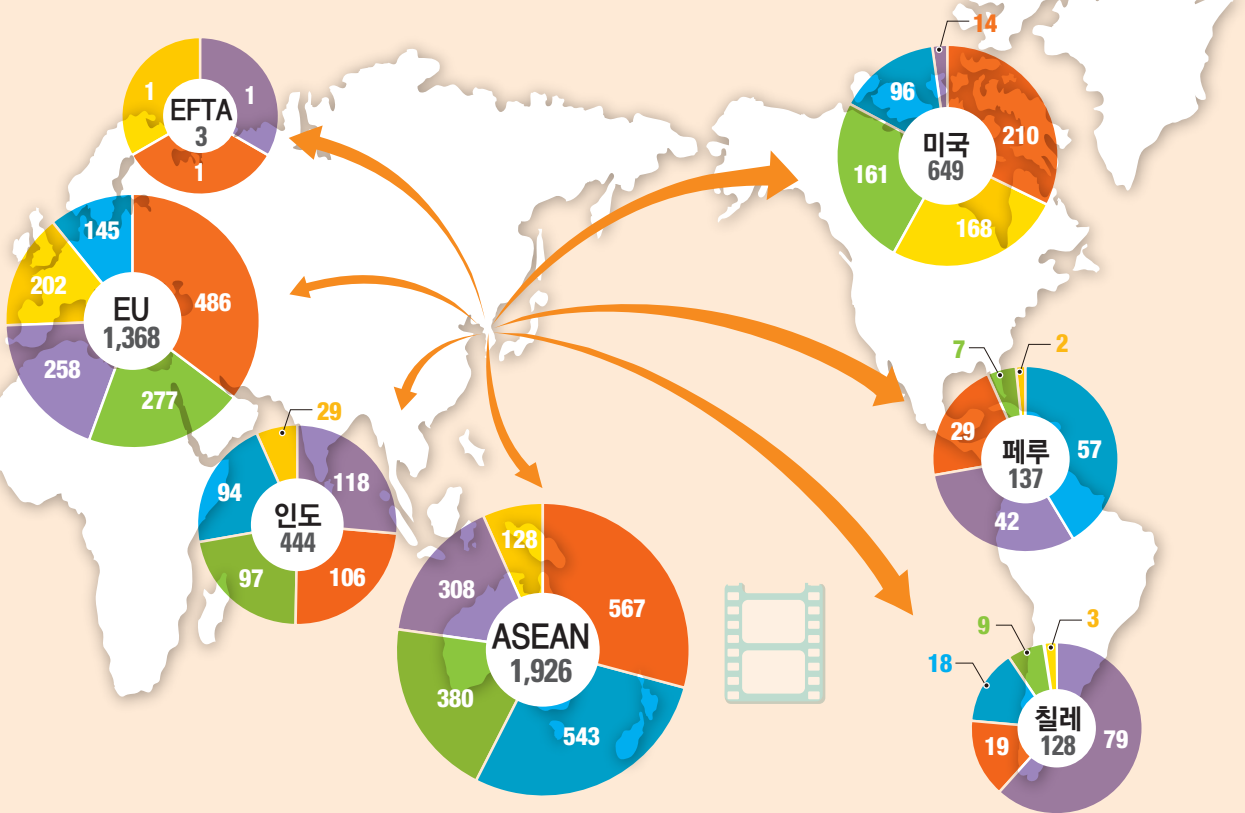
수출 플라스틱 및 그제품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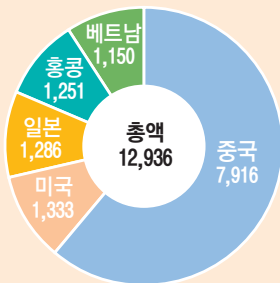
해당품목

-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플라스틱 및 그제품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 플라스틱 및 그제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3901	820	250	570
2	3902	953	101	852
3	3903	931	67	864
4	3907	1,418	362	1,056
5	3920	533	239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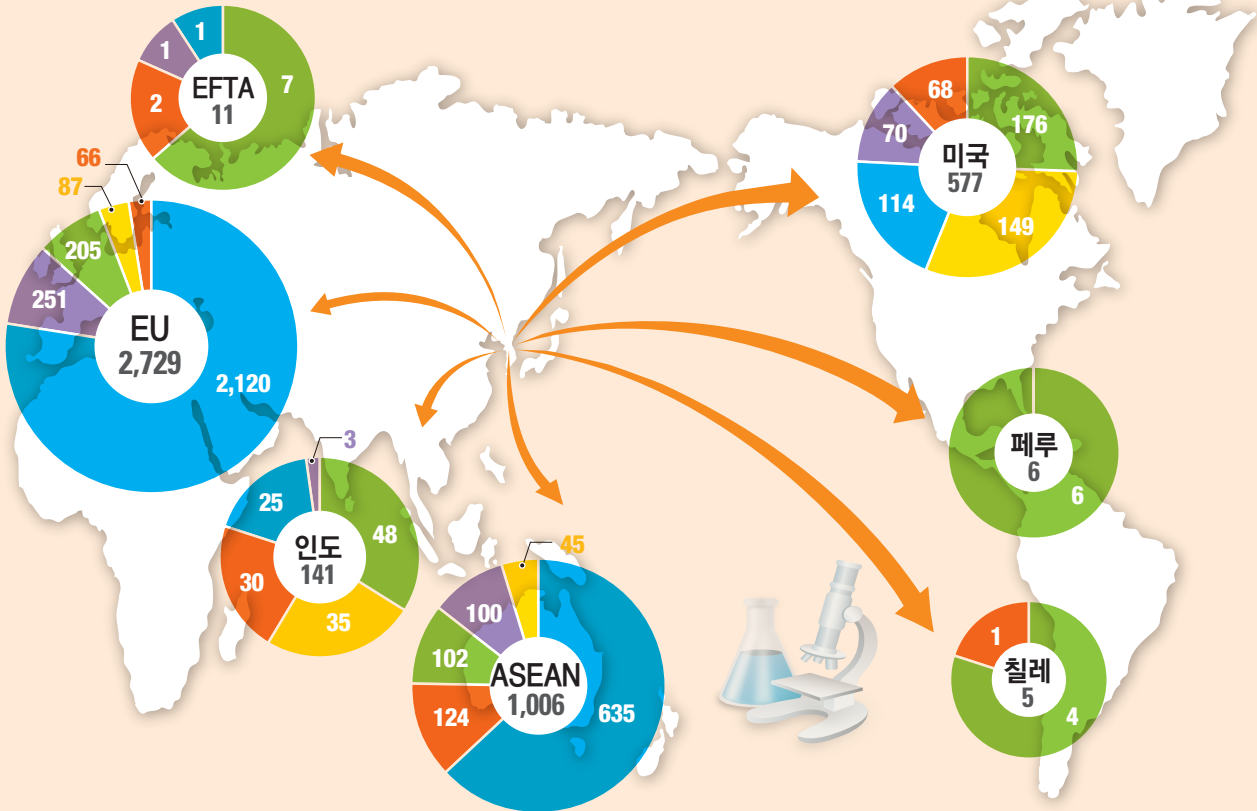
수출 광학기기

해당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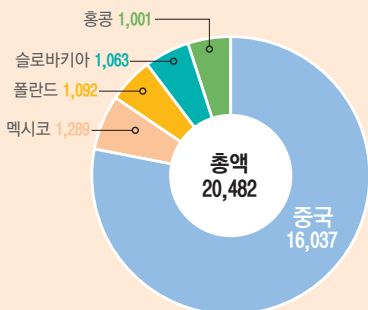
-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 9013 액정 디스플레이(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 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광학기기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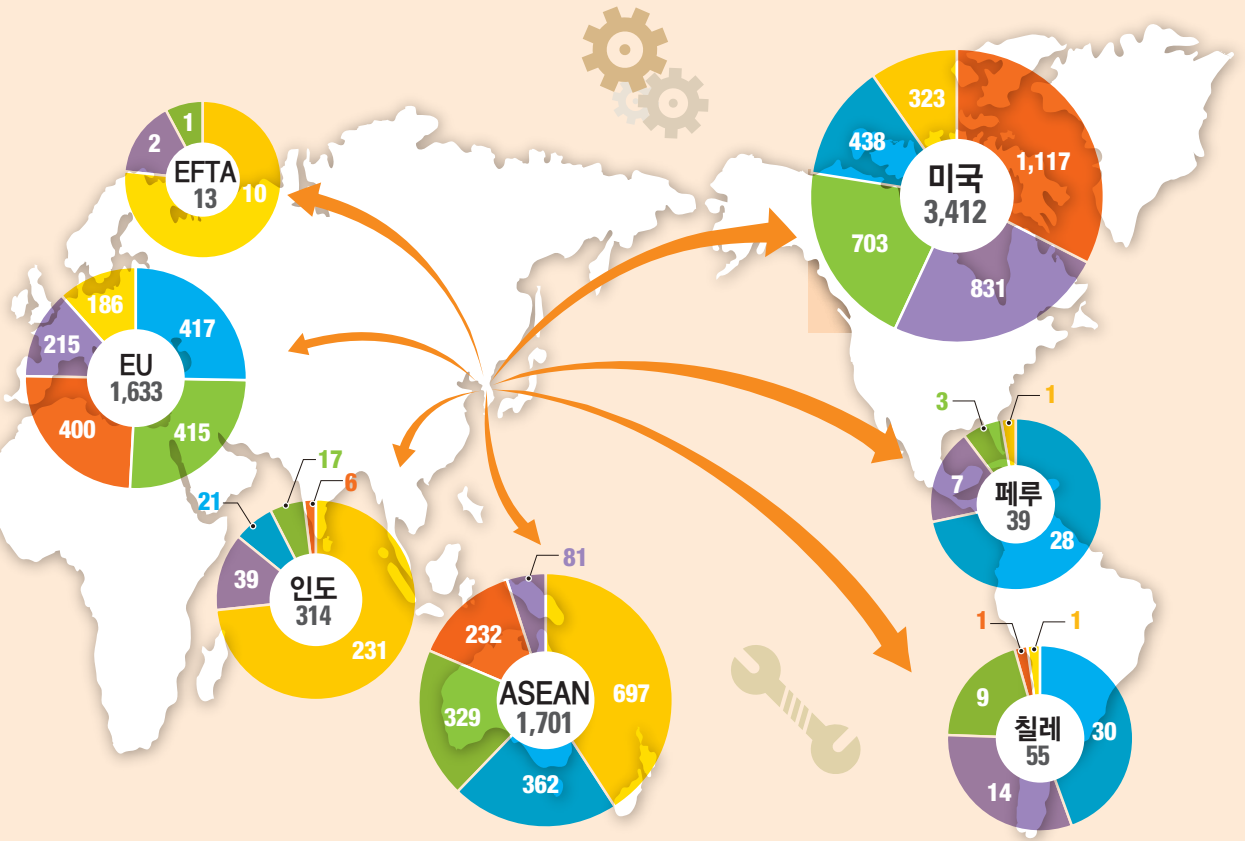
| 광학기기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9001	425	264	161
2	9013	2,895	437	2,458
3	9018	548	709	-161
4	9031	291	967	-676
5	9032	316	669	-353

수출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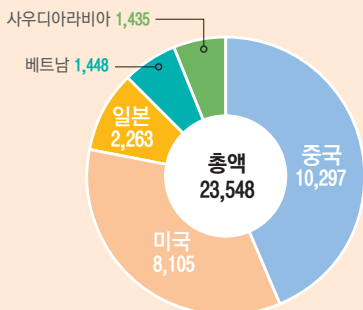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해당품목

-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er)·스크래퍼(scraper)·메카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캐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원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자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473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카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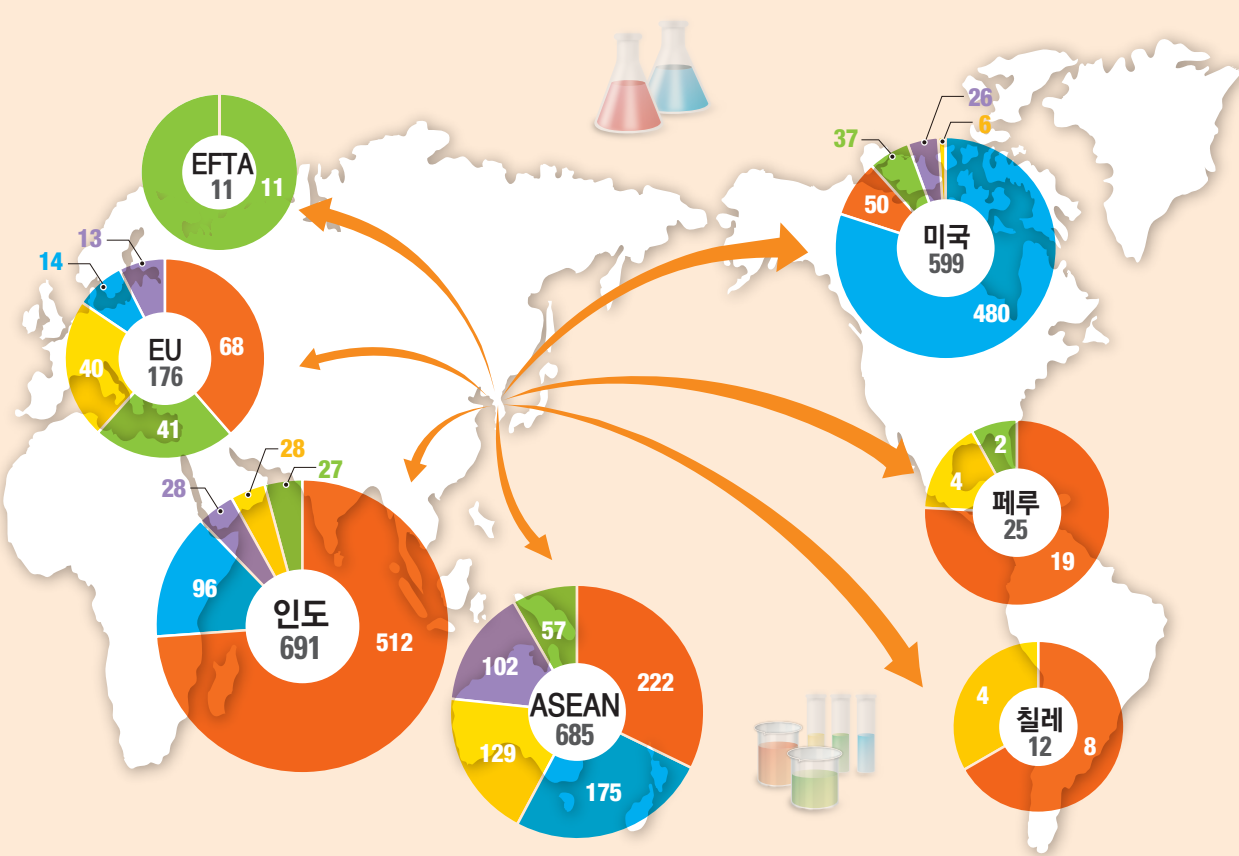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8418	1,189	119	1,070
2	8429	1,296	38	1,258
3	8471	1,477	1,007	470
4	8473	1,756	466	1,290
5	8479	1,449	1,565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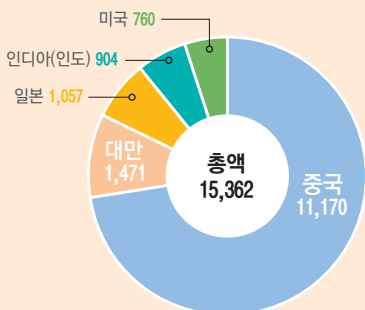
수출 유기화학품

- 해당품목**
- 2901 비환식탄화수소
 - 2902 환식탄화수소
 -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등
 -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 등
 -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유기화학품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 유기화학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2901	169	292	-123
2	2902	765	558	207
3	2916	175	124	51
4	2917	879	63	816
5	2929	211	45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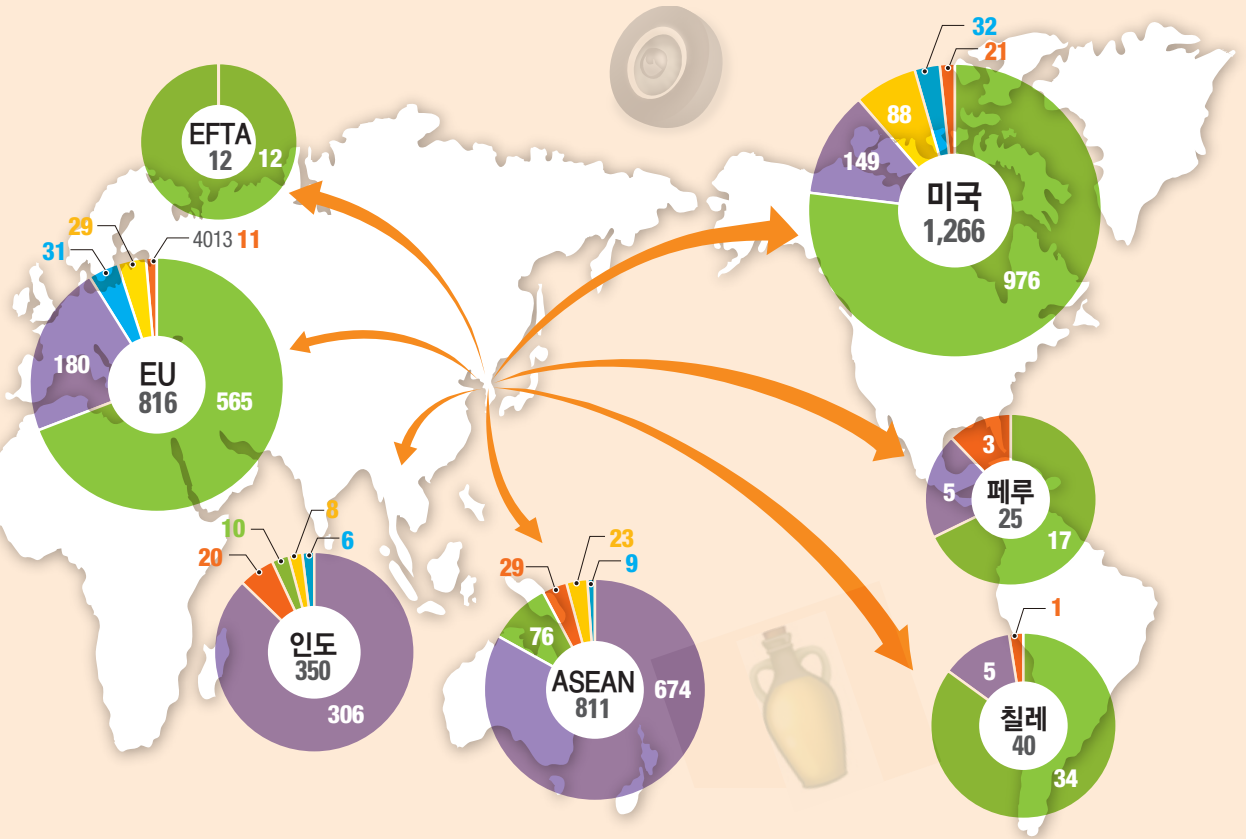
수출 고무와 그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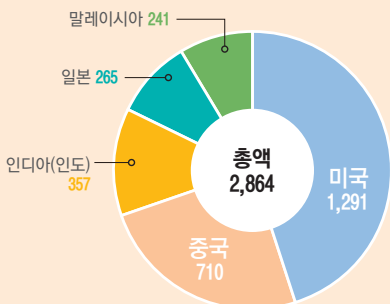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해당품목

-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제품으로 한정한다)
-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고무와 그제품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 고무와 그제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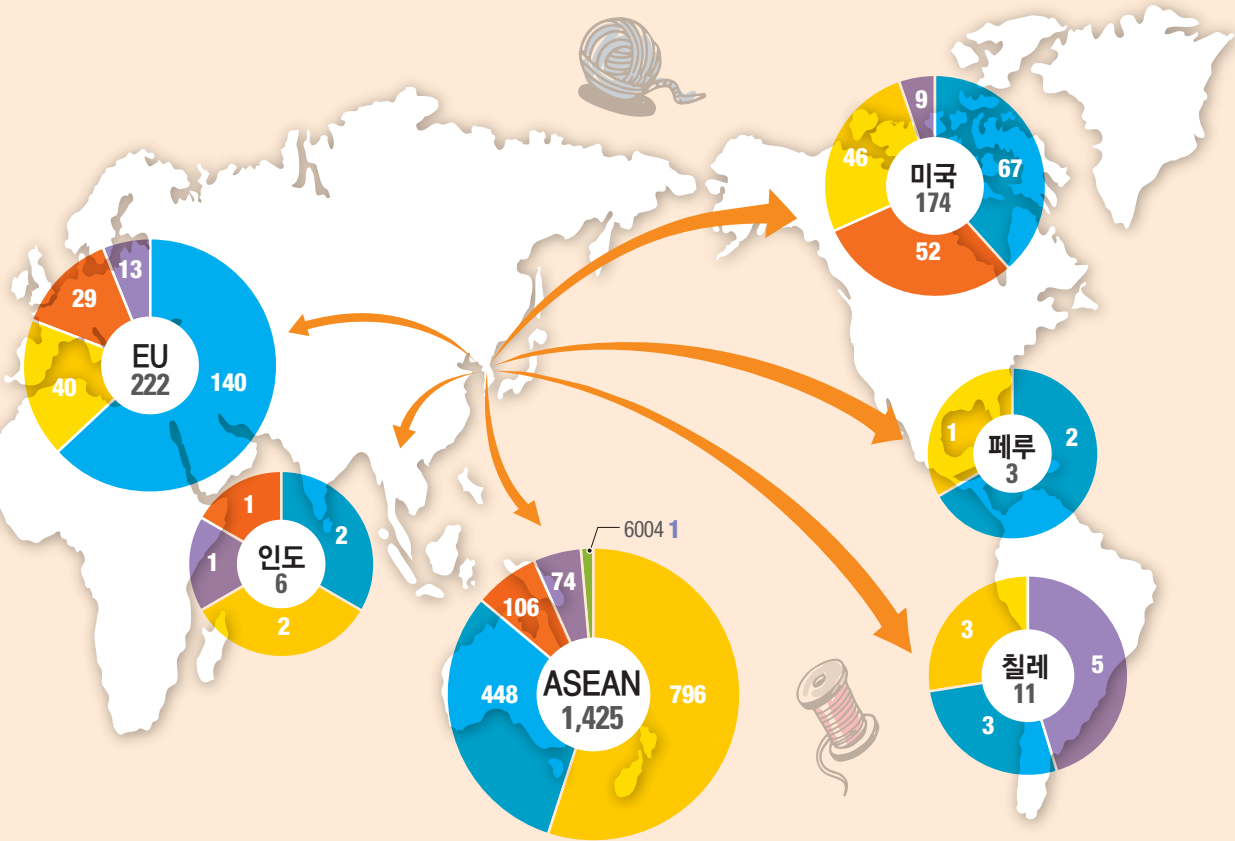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4002	1,319	244	1,075
2	4009	78	63	15
3	4011	1,690	176	1,514
4	4013	85	1	84
5	4016	148	116	32

수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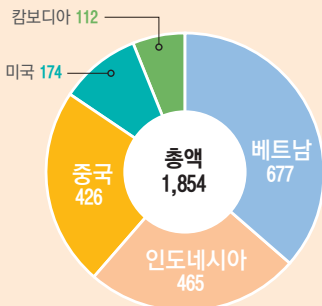
- 해당품목**
-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 (2013.1분기~3분기) |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6001	102	8	94
2	6002	662	9	653
3	6004	1	-	1
4	6005	188	9	179
5	6006	888	10	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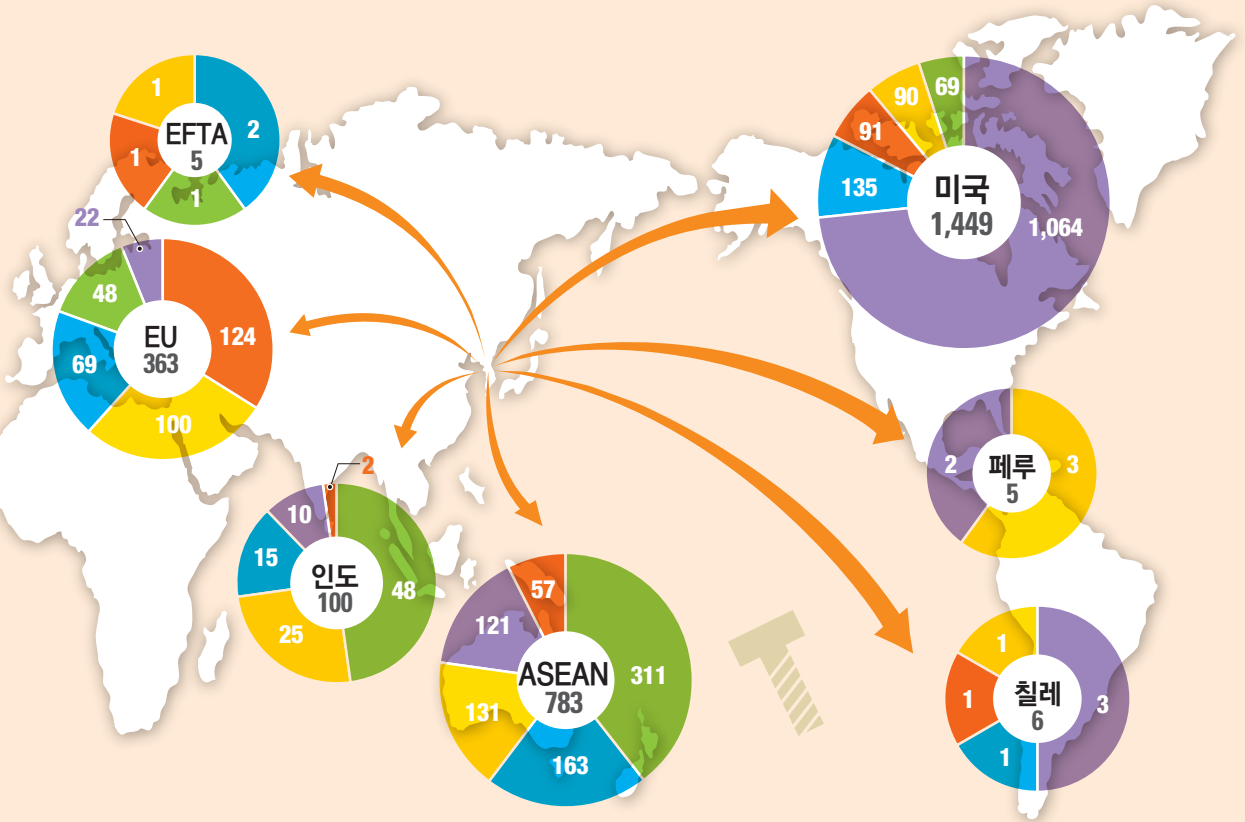
수출 철강의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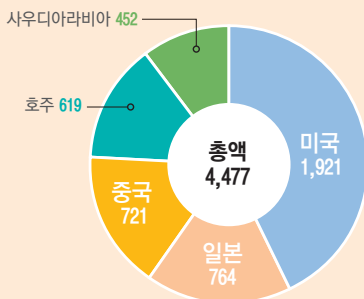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해당품목

-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예: 오픈시(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철강의 제품 주요국 대세계 수출현황(2013.1분기~3분기) |



| 철강의 제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7306	1,222	42	1,180
2	7307	385	244	141
3	7308	477	269	208
4	7312	276	62	214
5	7326	351	740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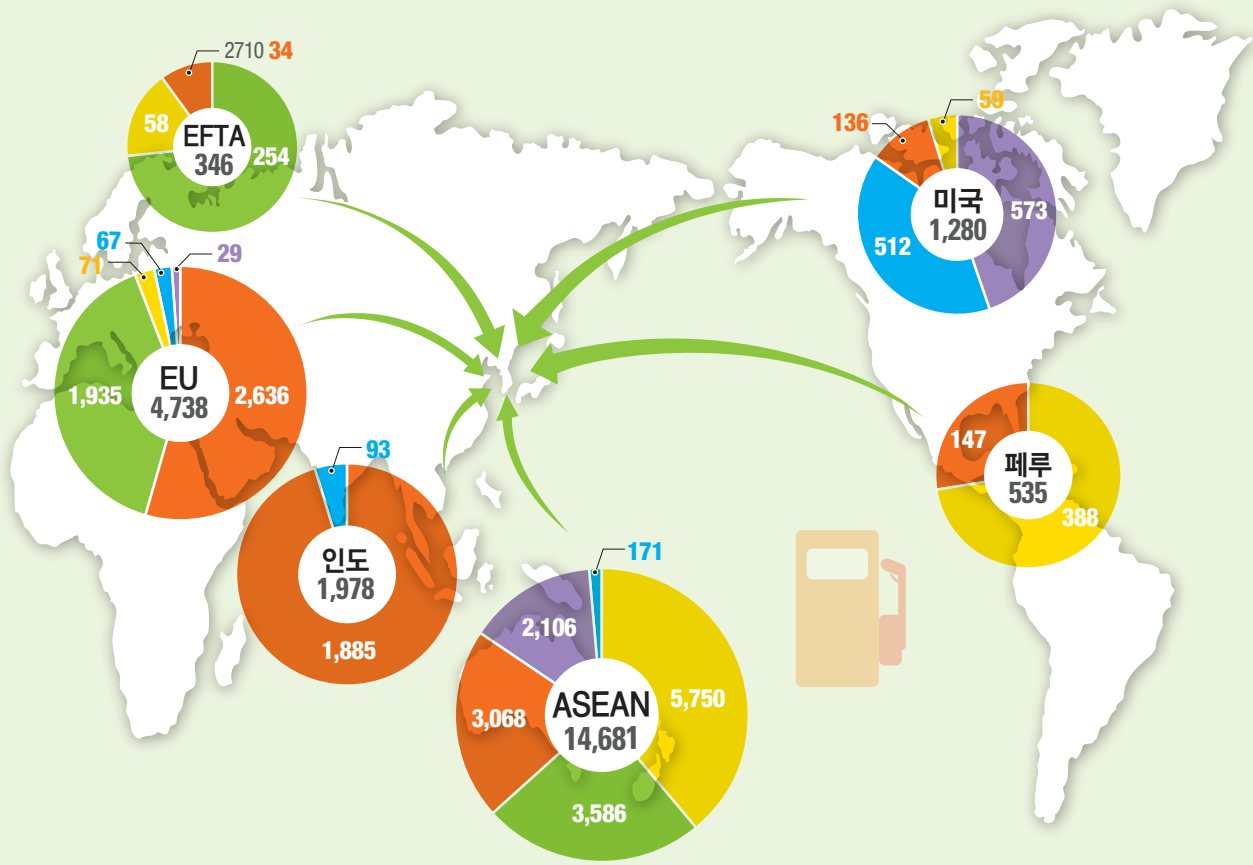
수입 광물성 연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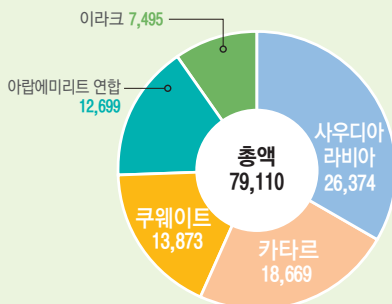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해당품목

-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2707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709 석유, 역청유(원유)
-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광물성 연료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광물성 연료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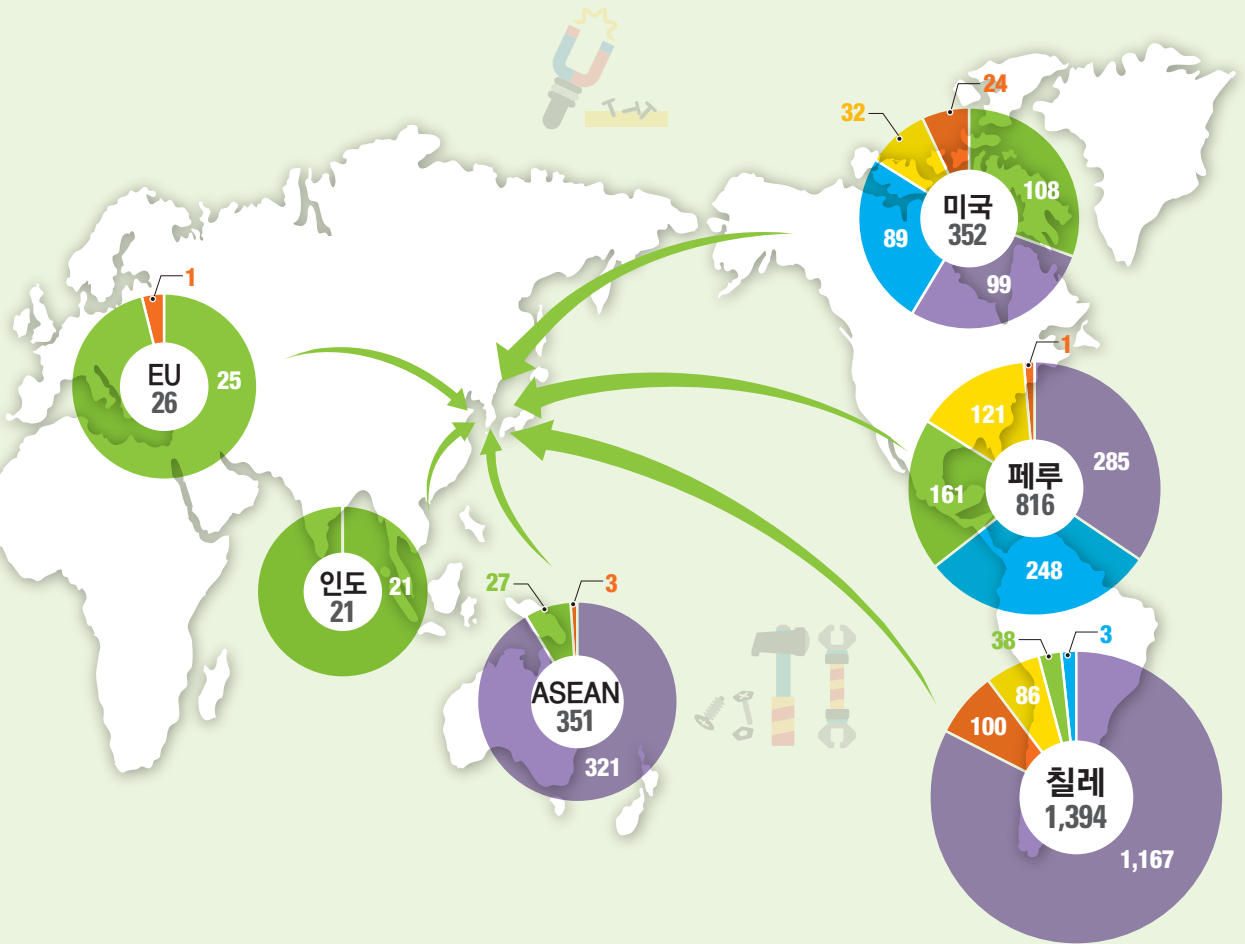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2701	-	2,708	-2,708
2	2707	146	843	-697
3	2709	-	5,775	-5,775
4	2710	18,687	7,906	10,781
5	2711	41	6,326	-6,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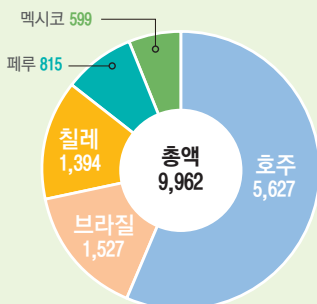
수입 광,슬랙,회

- 해당품목**
- 2603 동광과 그 정광
 - 2607 연광과 그 정광
 -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광,슬랙,회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광,슬랙,회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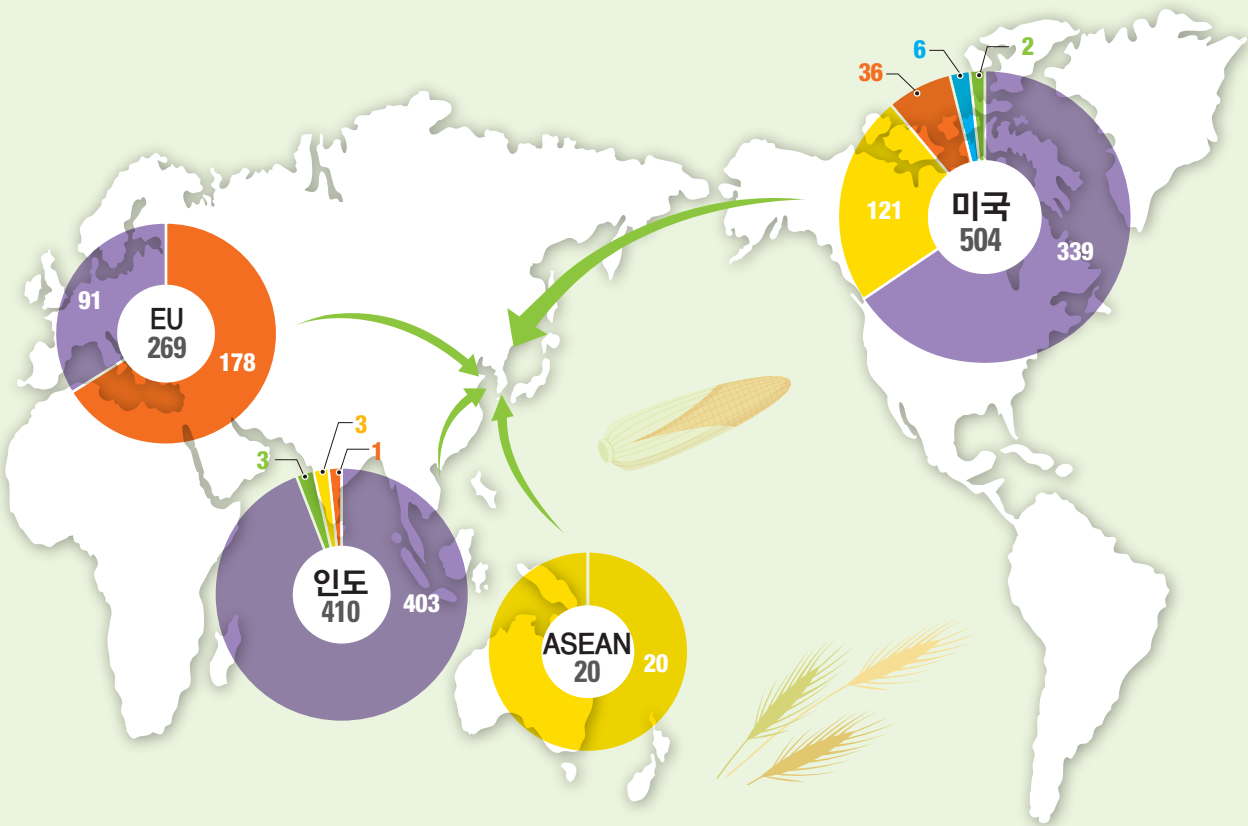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2603	-	1,872	-1,872
2	2607	-	340	-340
3	2608	-	380	-380
4	2613	13	129	-116
5	2616	-	239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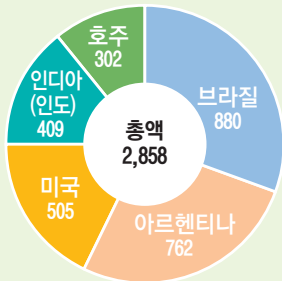
수입 곡물

- 해당품목**
- 1001 밀과 메슬린(meslin)
 - 1002 호밀
 - 1003 보리
 - 1005 옥수수
 - 1006 쌀

별첨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곡물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곡물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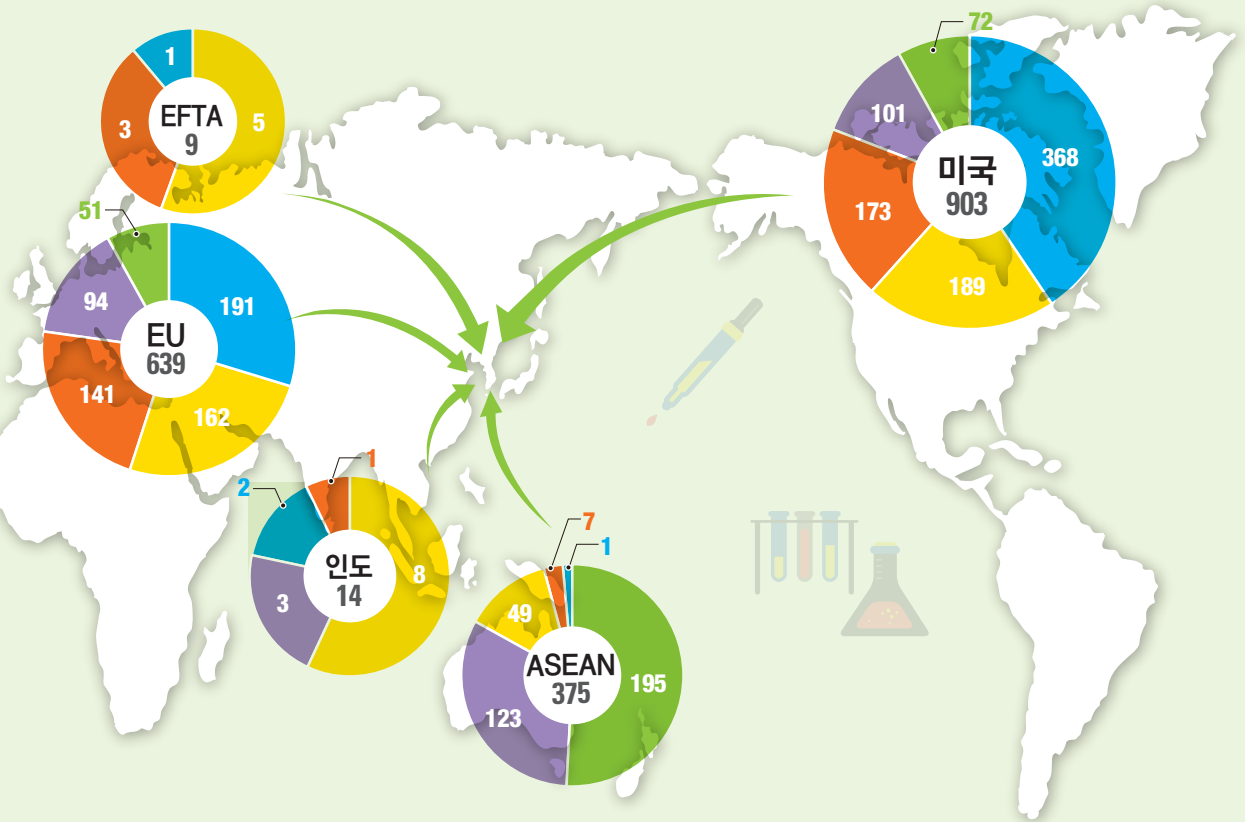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1001	-	833	-833
2	1002	-	6	-6
3	1003	-	5	-5
4	1005	-	215	-215
5	1006	-	144	-144

수입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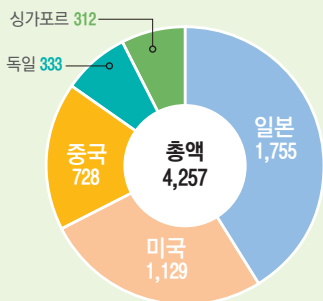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해당품목**
- 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우프처리된 화학원소와화학화합물
 - 3822 진단용 조제시약 및 실험실용 조제시약
 -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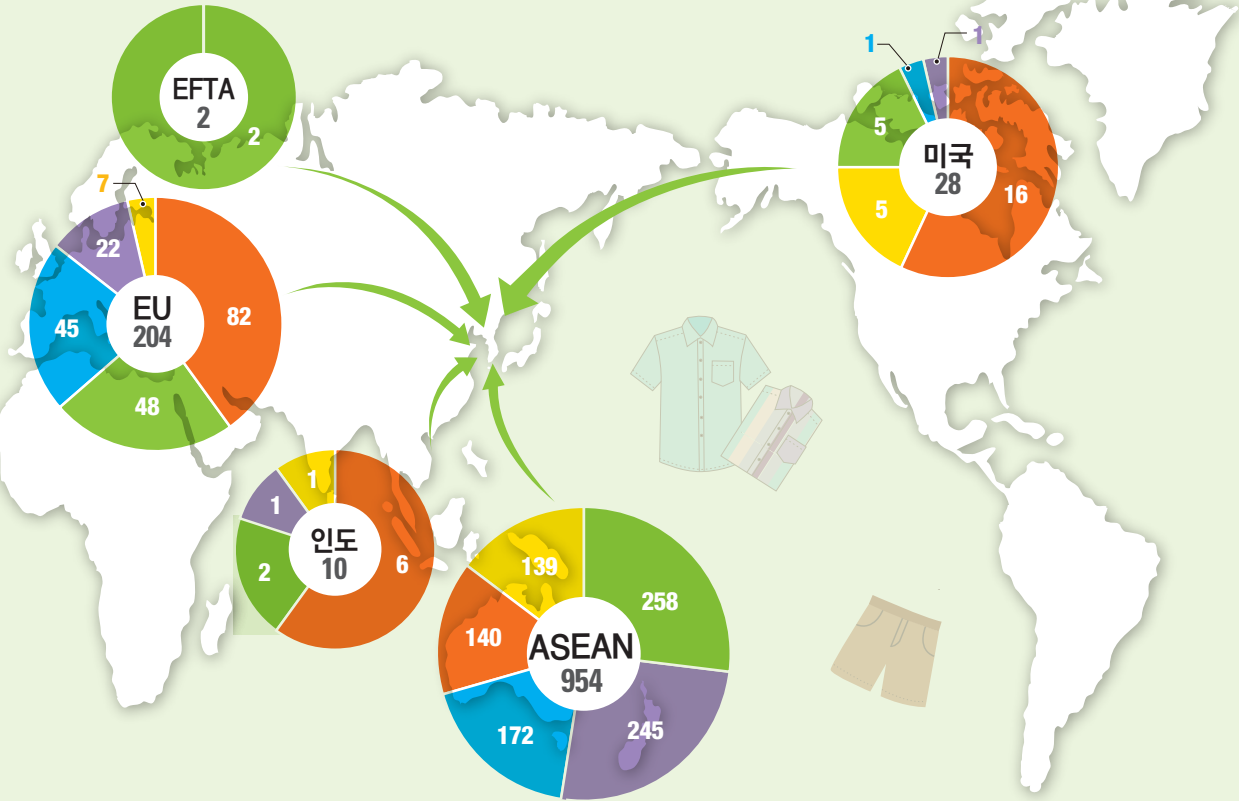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3811	17	321	-304
2	3815	92	563	-471
3	3818	241	318	-77
4	3822	58	325	-267
5	3824	154	413	-259

수입 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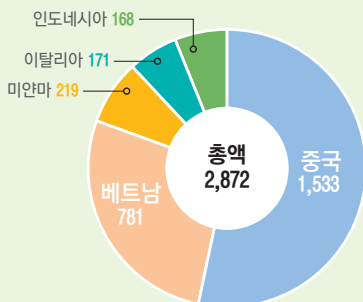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해당품목

-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6202 여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6204 여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 의류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의류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6201	2	269	-267
2	6202	3	218	-215
3	6203	11	315	-304
4	6204	13	244	-231
5	6211	4	152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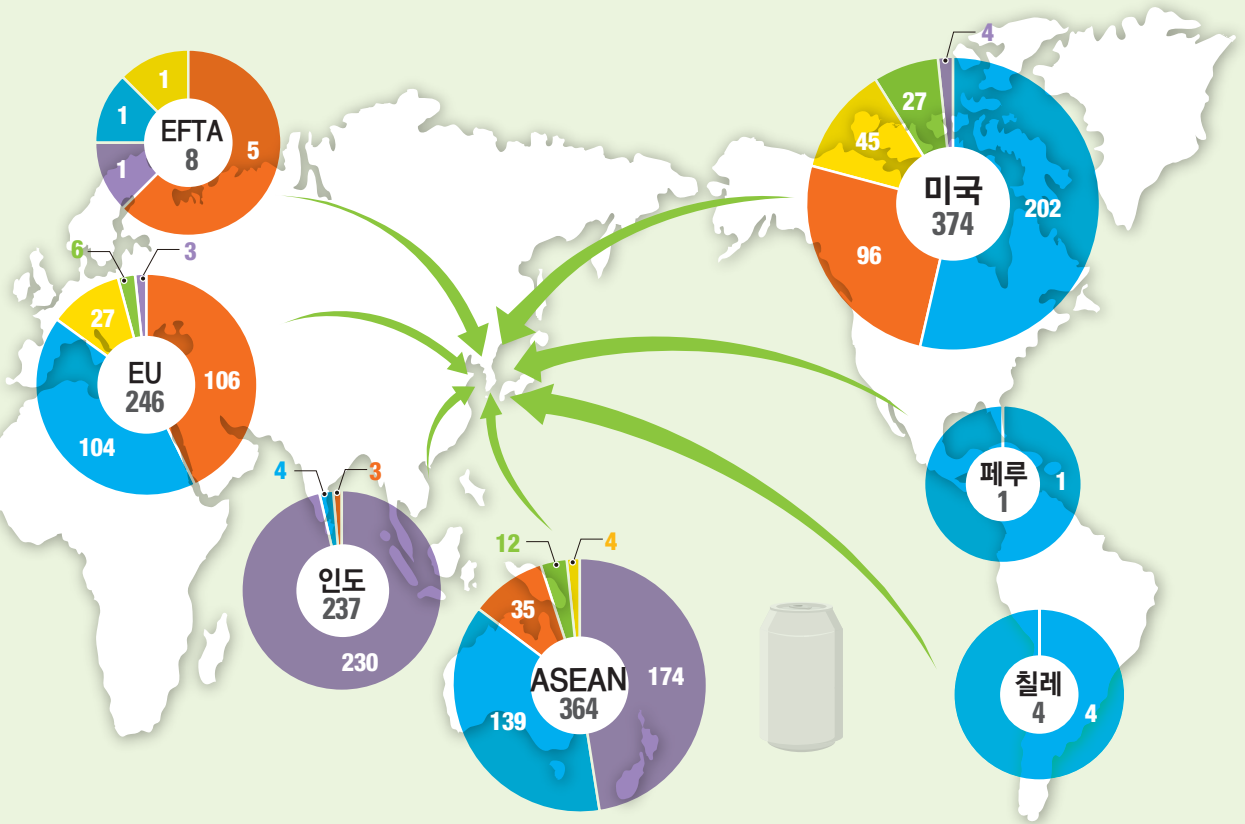
수입 알루미늄과 그제품

해당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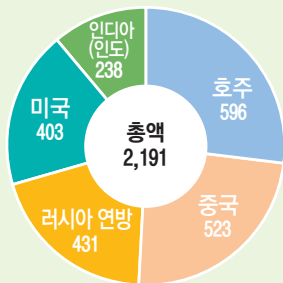
- 7601 알루미늄의 괴(塊)
-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알루미늄과 그제품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알루미늄과 그제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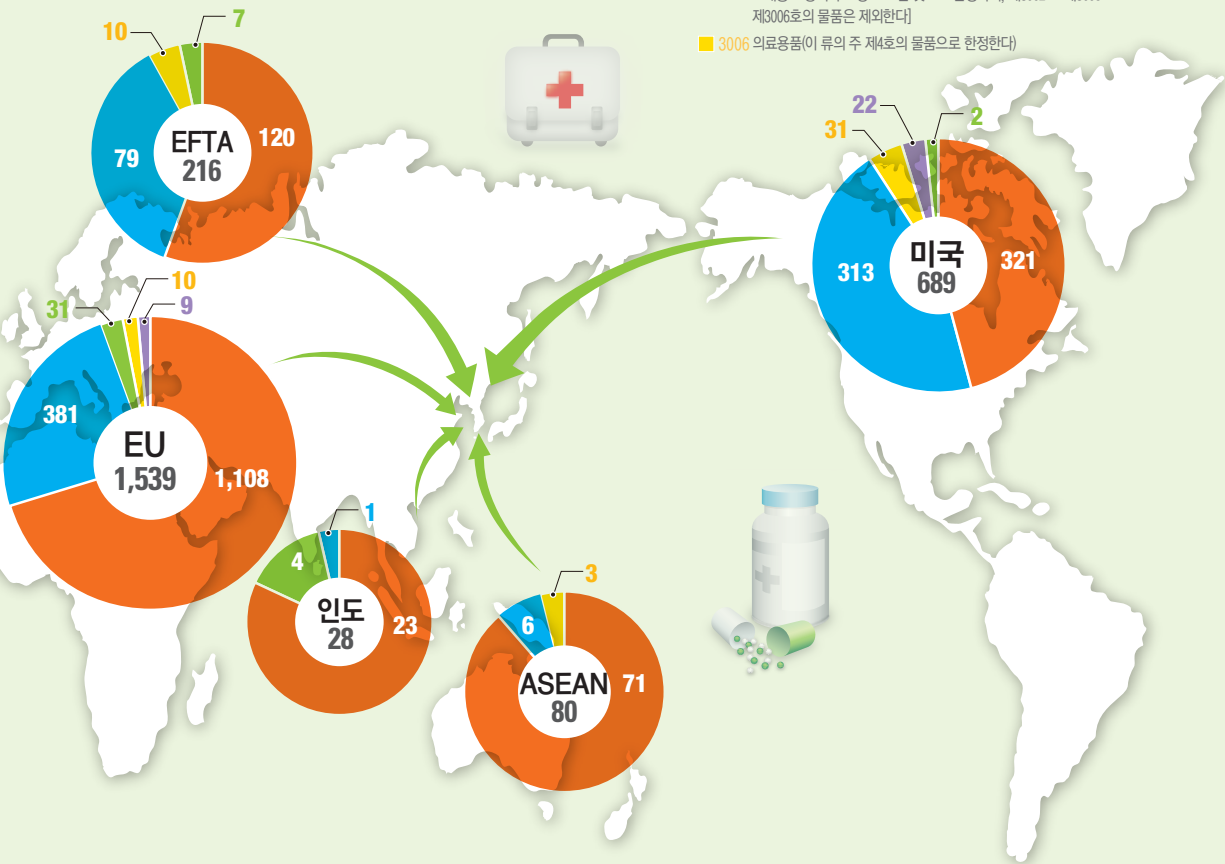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7601	80	412	-332
2	7602	1	455	-454
3	7604	33	45	-12
4	7606	472	245	227
5	7616	80	77	3

수입 의료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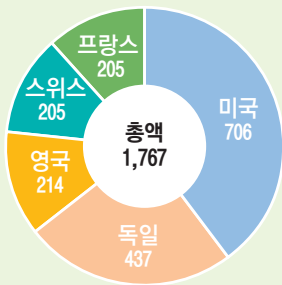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해당품목

-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線)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선(線)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해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3003 약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3004 약약품(혼합한 것)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의료용품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의료용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3001	3	31	-28
2	3002	91	780	-689
3	3003	25	44	-19
4	3004	188	1,643	-1,455
5	3006	18	5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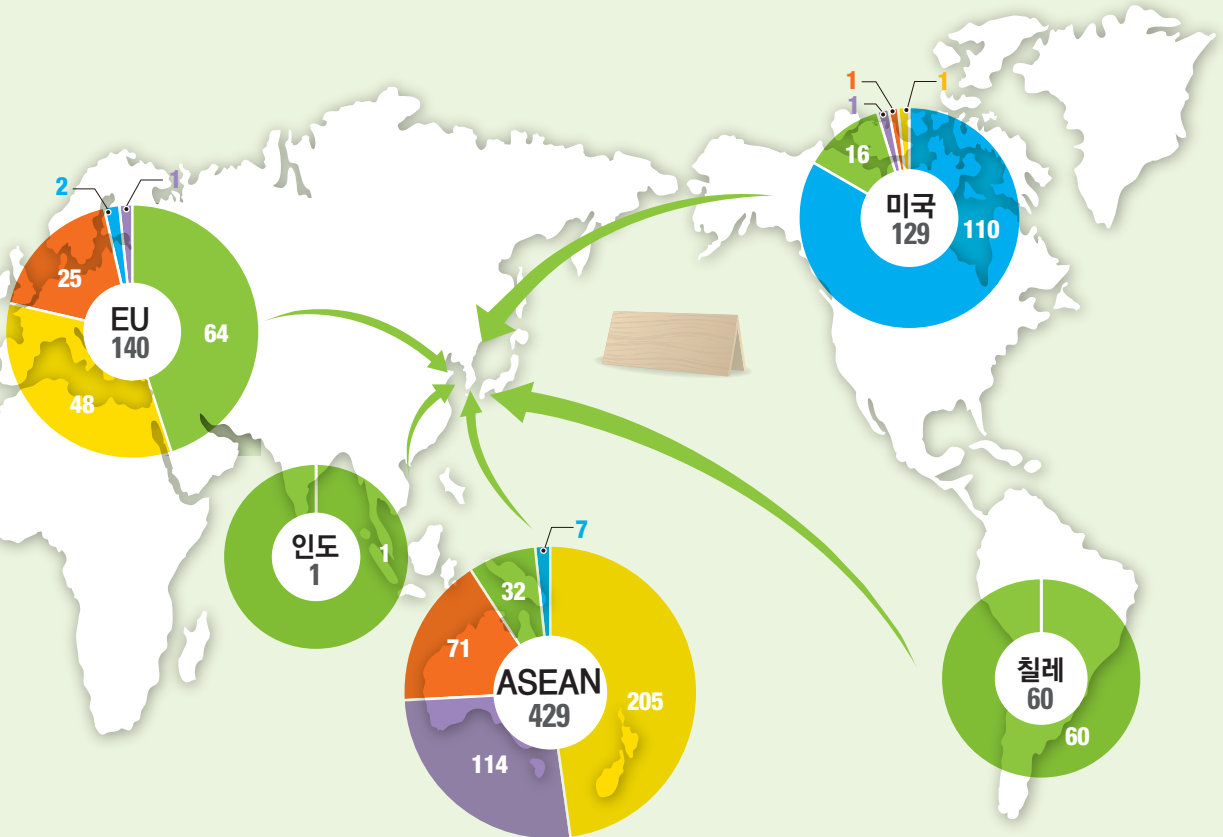
수입 목재와 그제품 및 목탄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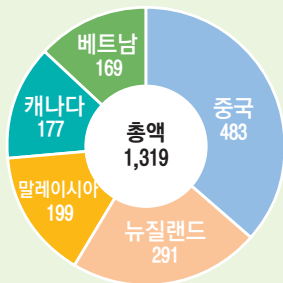
해당품목

- 4401 펄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4403 원목[꺾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톰 것인지에 상관없다]
- 4407 제재목[길이와 방향으로 쪼갠 것, 평식(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 [예: 웨이퍼보드(wat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 목재와 그제품 및 목탄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목재와 그제품 및 목탄 세부품목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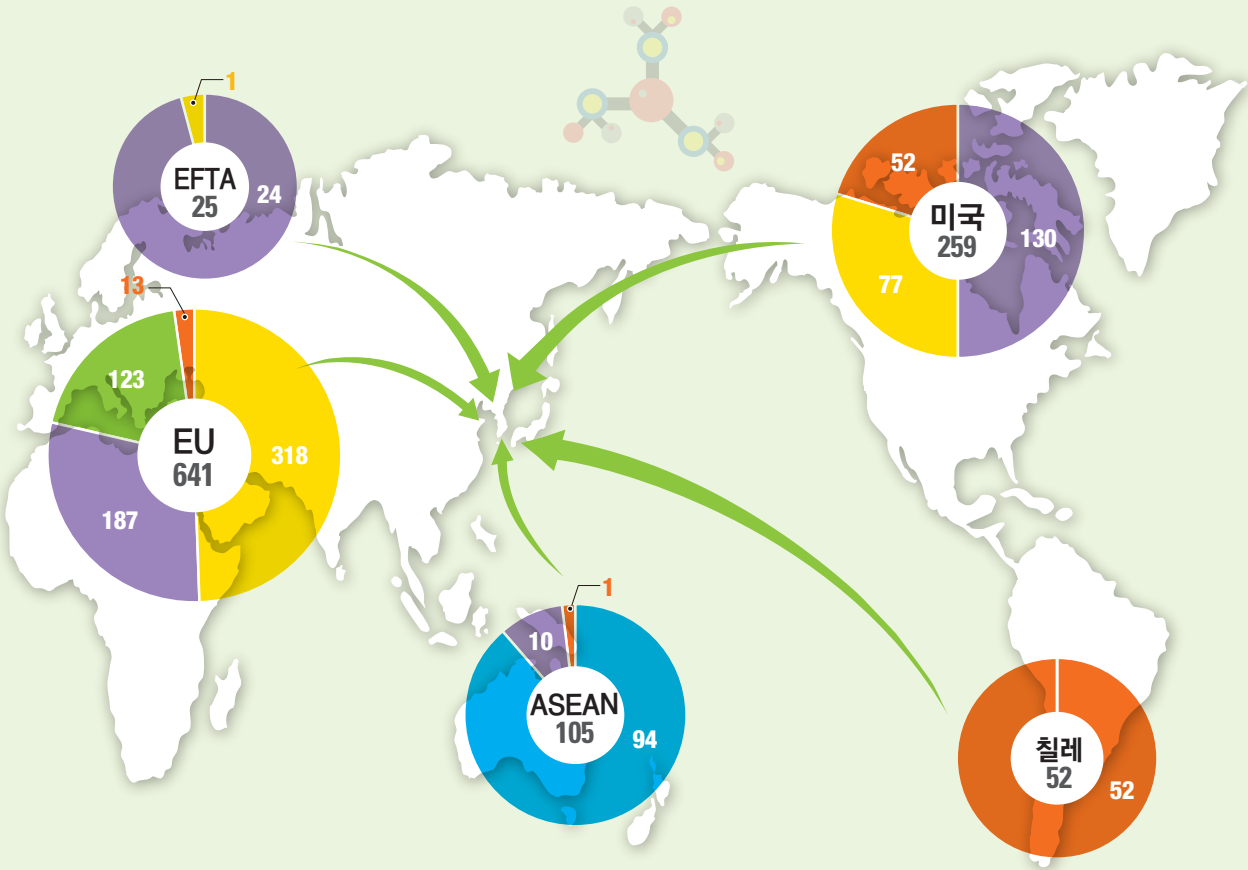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4401	-	116	-116
2	4403	-	119	-119
3	4407	-	173	-173
4	4410	-	97	-97
5	4412	-	254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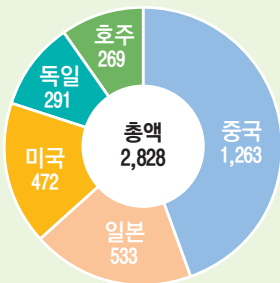
수입 무기화학품

- 해당품목**
-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 2822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례상의 산화코발트
 -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미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28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무기화학품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무기화학품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2804	97	351	-254
2	2814	2	94	-92
3	2822	-	123	-123
4	2836	39	118	-79
5	2844	1	396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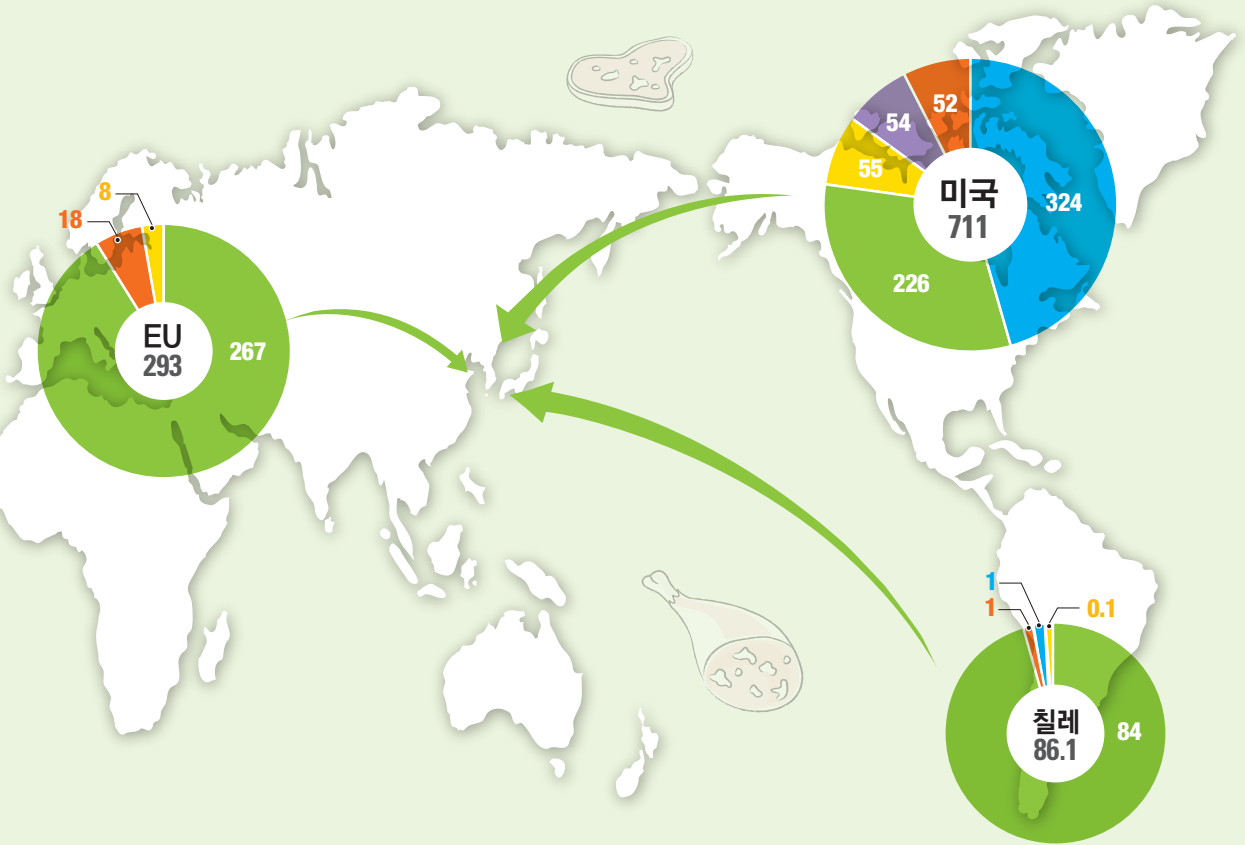
수입 육류

해당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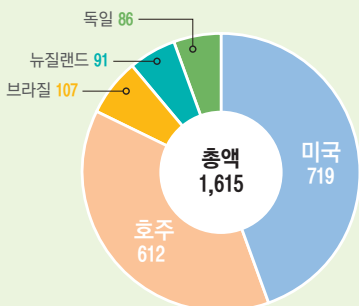
-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
- 0202 쇠고기(냉동한 것)
-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
-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
- 0207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



FTA 국별 상위품목의 실적



| 육류 주요국 대세계 수입현황(2013.1분기~3분기) |



| 육류 세부품목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품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1	0201	-	54	-54
2	0202	1.1	325	-323.9
3	0203	1.1	577	-575.9
4	0206	0.1	71	-70.9
5	0207	17	63	-46

부록

FTA 국가의 수출입 실적
미국 수출입실적 및 對한 교역품목



| FTA 국가의 수출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	2012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2012년 1월~11월 ²⁹⁾	2013년 1월~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EU	수출	55,727	49,371	-11.4	45,579	44,959	-1.4
	수입	47,424	50,4	6.2	45,458	50,814	11.8
	교역액	103,151	99,745	-3.3	91,037	95,773	5.2
페루	수출	1,368	1,950	42.5	1,830	1,314	-28.2
	수입	1,950	1,473	-24.5	1,330	1,884	41.7
	교역액	3,318	3,423	3.2	3,160	3,198	1.2
미국	수출	58,524	58,524	0.0	53,969	56,902	5.4
	수입	43,337	43,337	0.0	40,287	37,742	-6.3
	교역액	101,861	101,861	0.0	94,256	94,644	0.4
칠레	수출	2,381	2,469	3.7	2,249	2,235	-0.6
	수입	4,858	4,676	-3.8	4,334	4,262	-1.7
	교역액	7,239	7,145	-1.3	6,583	6,497	-1.3
ASEAN	수출	71,801	79,145	10.2	71,960	75,675	5.2
	수입	53,121	51,977	-2.2	47,878	48,687	1.7
	교역액	124,922	131,122	5.0	119,838	124,362	3.8
인도	수출	12,654	11,922	-5.8	11,068	10,451	-5.6
	수입	7,894	6,921	-12.3	6,329	5,729	-9.5
	교역액	20,548	18,843	-8.3	17,397	16,180	-7.0
EFTA	수출	1,818	1,495	-17.8	1,414	2,273	60.7
	수입	5,177	7,713	49.0	7,040	5,842	-17.0
	교역액	6,995	9,208	31.6	8,454	8,115	-4.0
FTA체결국	수출	201,957	204,399	1.2	187,592	193,809	3.3
	수입	164,993	166,642	1.0	152,827	154,960	1.4
	교역액	366,950	371,041	1.1	340,419	348,769	2.5
비 FTA국	수출	353,257	343,471	-2.8	315,403	317,861	0.8
	수입	359,420	352,942	-1.8	323,688	316,190	-2.3
	교역액	712,679	696,415	-2.3	639,093	634,051	-0.8
총계	수출	555,214	547,870	-1.3	502,995	511,670	1.7
	수입	524,413	519,584	-0.9	476,515	471,150	-1.1
	교역액	1,079,629	1,067,456	-1.1	979,512	982,820	0.3

29) 2013년 12월 확정치는 2014년 1월 15일 이후에 확정되므로 1월에서 11월까지 통계를 전년동기와 비교함

| FTA 체결국별 특혜수출입 분기별 실적 (2013.1분기~2013.4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3. 4분기 ³⁰⁾	2012. 1월 ~ 11월	2013. 1월 ~ 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 EU	7,397	5,802	3,632	4,002	19,480	20,833	6.9
2 페루	158	141	185	115	534	599	12.1
3 미국	4,269	4,883	5,018	2,866	11,675	17,036	45.9
4 칠레	458	526	408	318	1,631	1,710	4.8
5 ASEAN	1,611	1,728	1,772	1,164	4,855	6,275	29.2
6 인도	906	742	770	509	2,709	2,927	8.0
7 EFTA	40	35	37	31	173	143	-17.4
총 계	14,839	13,857	11,822	9,004	41,057	49,522	20.6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3. 4분기	2012. 1월 ~ 11월	2013. 1월 ~ 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 EU	6,877	6,360	6,654	4,825	22,419	24,716	10.2
2 페루	253	144	115	89	147	601	310.0
3 미국	3,853	4,036	3,403	2,821	9,429	14,113	49.7
4 칠레	517	483	452	345	1,931	1,797	-6.9
5 ASEAN	5,767	5,352	4,850	2,953	20,116	18,922	-5.9
6 인도	373	395	341	288	974	1,397	43.4
7 EFTA	675	472	483	412	3,784	2,042	-46.0
총 계	18,315	17,242	16,298	11733	58,800	63,588	8.1

30) 2013. 4분기 자료는 10월~11월 자료로 12월 자료의 경우 다음달 15일 이후 추출 가능하여 작성당시 추출 가능한 통계로 작성

| FTA국가로의 수출입 MTI 3단위 5대품목(2013.1분기~2013.4분기)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출)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3. 4분기 ³⁾	2012. 1월 ~ 11월	2013. 1월 ~ 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 석유제품	5,741	6,423	6,592	4,197	23,331	22,953	-1.6
2 자동차	5,510	5,990	4,558	4,293	18,522	20,351	9.9
3 반도체	3,694	4,091	4,311	3,026	13,046	15,122	15.9
4 무선통신기기	3,018	3,467	3,410	3,132	10,058	13,027	29.5
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620	1,324	1,241	8,692	15,865	12,877	-18.8
총 계	19,583	21,295	20,112	23,340	80,822	84,329	4.3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수입)	2013. 1분기	2013. 2분기	2013. 3분기	2013. 4분기	2012. 1월 ~ 11월	2013. 1월 ~ 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1 반도체	2,916	3,286	3,269	2,746	11,668	12,217	4.7
2 석유제품	2,944	2,724	2,646	1,643	9,198	9,957	8.3
3 천연가스	2,190	2,014	1,849	1,495	7,848	7,548	-3.8
4 원유	2,984	1,590	1,191	500	9,392	6,265	-33.3
5 자동차	1,061	1,183	403	2,135	3,914	4,782	22.2
총 계	12,095	10,797	9,358	8,519	42020	40769	-3.0

3) 2013. 4분기 자료는 10월~11월 자료로 12월 자료의 경우 다음달 15일 이후 추출 가능하여 작성당시 추출 가능한 통계로 작성

| 미국 연도별 수출입 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1,162,708	1,300,136	1,056,932	1,277,504	1,480,432	1,546,455
수입	1,953,699	2,100,141	1,557,876	1,912,092	2,207,824	2,275,392
무역수지	-790,991	-800,005	-500,944	-634,588	-727,392	-728,937

| 미국 주요 교역국가(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국				10대 수입국			
	국가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율	국가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율
		2011	2012			2011	2012	
1	캐나다	280,890	291,758	3.9	중화인민공화국	399,362	425,644	6.6
2	멕시코	198,378	216,331	9.1	캐나다	315,347	324,246	2.8
3	중화인민공화국	103,939	110,590	6.4	멕시코	262,864	277,653	5.6
4	일본	65,706	70,046	6.6	일본	128,925	146,388	13.5
5	영국	55,881	54,817	-1.9	독일	98,663	108,524	10
6	독일	49,156	48,786	-0.8	사우디아라비아	56,661	58,880	3.9
7	한국	43,415	43,717	1.8	한국	47,476	55,667	17.3
8	브라질	42,944	42,318	-2.5	영국	51,236	54,935	7.2
9	네델란드	42,351	40,680	-3.9	인도	40,040	41,601	3.9
10	홍콩	36,449	37,480	2.8	프랑스	36,153	40,518	12.1

주 : MTI 3단위 기준

| 미국 주요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명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율	품명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율
		2011	2012			2011	2012	
1	역청유에서 생산된 오일·페트로늄 오일(원유를 제외)	91,527	102,724	12.2	역청유에서 생산된 오일·페트로늄 오일·원유	2,207,824	2,275,392	3.1
2	항공기	80,177	94,120	17.4	수송용 전동기 및 전동차	336,687	315,663	-6.2
3	수송용 전동기 및 전동차	48,389	54,517	12.7	역청유에서 생산 된 오일 및 페트로 늄 오일 (원유를 제외함)	123,240	147,668	19.8
4	트랙터, 전동차용 부분품	38,023	41,780	9.9	자동데이터 처리 기구	92,293	90,304	-2.2
5	Estimate of non-canadian low value export shipments	32,288	35,499	9.9	유선통화용 전자 기구	79,613	84,228	5.8
6	전자 통합 서킷 및 마이크로 조합회로	35,718	34,408	-3.7	트랙터, 전동차용 부분품	76,663	80,482	5
7	금	31,165	33,732	8.2	교체용 수입부품, 반환용 수입품	48,803	56,525	15.8
8	유선통화용 전자 기구	27,429	28,730	4.7	의약품(백신제외)	41,515	48,257	16.2
9	자동데이터 처리 기구	27,394	27,785	1.4	텔레비전 수신기	49,360	46,932	-4.9
10	대두	17,584	24,742	40.7	전자 통합 서킷 및 마이크로 조합회로	31,192	30,670	-1.7

주 : HS 4단위

| 미국 對한 주요 교역품목 (2012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 명	수 출 액		전년대비 증감율	품 명	수 입 액		전년대비 증감율
		2011	2012			2011	2012	
1	반도체	4,044	4,477	10.7	자동차	8,937	10,833	21.2
2	항공기 및 부품	2,857	3,145	10.1	무선통신기기	9,238	5,710	-38.2
3	반도체제조용장비	2,762	2,711	-1.8	자동차부품	5,018	5,642	12.4
4	식물성물질	2,154	1,821	-15.4	석유제품	2,588	2,896	11.9
5	계측제어분석기	1,260	1,420	12.7	반도체	2,726	2,611	-4.2
6	곡실류	1,766	1,376	-22	철강관 및 철강선	1,714	2,009	17.2
7	원동기 및 펌프	1,222	1,208	-1.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60	1,947	156.2
8	합금철선철 및 고철	1,425	1,189	-16.6	고무제품	1,655	1,798	8.6
9	석탄	1,341	1,128	-15.9	컴퓨터	1,482	1,523	2.8
10	육류	1,322	1,043	-21.1	원동기 및 펌프	1,149	1,380	20.1

주 : HS 4단위

| 미국의 한·중·일 수출동향 (2012.3~2013.8) |

단위 : 천달러, %

HS 6단위	한국		중국		일본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금액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총계	15,004,994	25.3	41,430,664	-1.9	19,489,105	23.0
1 8800.00	3,890,345	37.9	14,846,726	64.2	10,226,321	47.0
2 8542.31	3,259,697	135.2	2,603,672	-33.8	574,398	23.1
3 8486.20	2,374,775	-6.1	795,096	-28.7	602,318	-30.2
4 8542.32	1,539,512	-25.4	1,121,070	1.4	136,501	-59.9
5 7204.49	1,125,575	-30.2	1,006,629	-51.3	5,324	-93.9
6 2701.12	889,990	-29.0	1,791,591	38.8	1,120,381	-24.3
7 1001.99	763,826	6.6	877,568	383.6	1,667,476	-7.4
8 1005.90	509,339	-79.6	1,500,322	35.4	3,728,557	-33.3
9 3004.90	950,785	83.0	697,334	40.1	3,138,438	20.6
10 2926.10	643,914	-4.9	77,755	-32.3	20,702	3299.3
11 8486.90	697,607	-10.1	216,632	-27.2	457,965	0.0
12 8803.30	654,001	11.4	6,030	4.4	1,019,444	13.1
13 2707.30	556,144	-22.9	58,883	255.9	6	-99.9
14 9031.41	533,728	54.1	116,626	-42.1	102,536	-37.6
15 1201.90	486,997	5.5	16,054,590	-21.4	1,528,304	-1.4
16 9880.00	564,900	-18.2	1,028,135	-17.6	1,036,931	-19.6
17 8542.39	575,536	1.9	945,789	5.4	585,729	44.2
18 0203.29	351,246	-24.8	373,912	-28.7	1,095,853	-3.5
19 7602.00	389,729	-9.5	3,480,604	-9.7	38,817	-13.7
20 0202.30	354,102	-25.8	2,420	232.0	620,303	65.3

증감률 : 직전 동기대비 개별 국가의 해당품목의 증감률(이하 동일)

[미국의 한·중·일 수입동향 (2012.3~2013.8) |

단위 : 천달러, %

HS 6단위	한국		중국		일본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금액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총계	45,077,232	6.7	135,435,045	21.0	67,419,455	16.7
1 8703.23	13,234,662	24.1	8,087	59.3	32,123,487	23.2
2 8517.12	7,806,485	-33.1	50,558,766	49.9	17,214	0.9
3 2710.19	4,299,343	50.4	24,914	897.0	852,675	39.4
4 8542.39	2,816,913	2.3	725,227	-6.1	600,581	-26.0
5 8703.24	2,889,341	38.7	1,185	162.7	18,931,997	5.2
6 4011.10	1,768,688	1.7	2,154,860	77.0	1,110,178	-19.8
7 8473.30	1,949,380	-24.8	12,864,063	-2.9	325,924	-26.8
8 8708.99	1,511,254	9.9	2,157,067	21.1	4,054,459	3.2
9 8418.10	1,488,144	13.2	398,467	246.4	4,528	3522.4
10 7306.29	1,170,253	12.4	396	95.1	124,460	189.8
11 8708.29	1,277,579	44.0	1,372,317	28.1	979,130	7.5
12 9801.00	1,169,119	35.7	2,584,572	49.6	3,627,656	35.3
13 8429.52	858,024	105.1	26,485	181.7	3,629,014	60.9
14 2902.20	859,596	21.0	442	-87.7	392,269	3591.9
15 8471.30	798,410	0.3	60,219,505	6.7	374,415	-35.0
16 8542.32	1,112,658	30.7	700,523	26.7	736,197	6.1
17 8471.41	609,917	91.9	1,616,360	-19.9	42,025	-22.1
18 7306.19	795,015	40.0	7,256	-9.9	92,791	3.4
19 8450.20	638,886	-16.0	605,026	15373.8	23	-91.4
20 8451.29	840,478	14.2	134,754	2321.9	1,013	4504.5

새로운 나 새로운 인생

직업상담

- 전문 취업상담
- 적성검사
- 진로설계

1:1 맞춤형 취업상담

개별 상담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원이 구직 여성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로 상담해 드립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의욕을 상실했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자신감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정보 제공

구직 여성에게 취업정보(여성유망 직종, 자격, 시험정보, 일자리 등)와 직업교육훈련 정보, 고용관련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직업교육 훈련

- 직업의식교육
- 능력개발교육
- 면접교육

무료 직업교육

직업 능력개발이 필요한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원광하이동지도사, 실베케어, 생태여행기획기, 기업공개 정보관리사, 태양광산업정보실관리(OO)전문기 등

직업의식 고취교육

직업의식 교육, 능력개발 교육, 이미지 메이킹, 면접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전문 및 심화교육

전문 및 심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합니다.



직업교육 과정은 센터마다 다르며,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 알선

- 여성인턴제도
- 동행면접

개인 맞춤형 취업 알선

구직 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면접에 어려움을 느낄 땐 취업설계사가 면접에 동행해 드려기도 합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체/일터에서 인턴(6개월 이내)으로 일하면서 직장과 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이며, 과정과 내용은 새일여성인턴제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직업교육훈련교육생 및 수료자, 취업을 하기 직전 단계의 구직자 대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기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여성친화기업인증, 사업장인사개선 등 강의지원, 환경개선지원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직 희망 여성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마다 취업설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는 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면서 성공적인 취업 및 직장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 ▶ 여성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취업설계사가 직업상담을 하고 취업정보를 제공 하기도 합니다.



201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무료

엄마! 예방접종이
무슨가 됐대!

“넌 더 건강해지고
엄마는 더 웃을 수 있게!”



국정
약속실천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 부담금 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2014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누가 해당이 되나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 혜택은요?

2014년 1월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은 11가지 국가예방접종
비용전액을 지원해 준대요~!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Td, Tdap, Hib까지
11종이나 무료 혜택을 받게 됐죠!

- DTaP-IPV(콤보백신)으로 접종시 접종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정의료기관 검색 등 관련문의는 관할보건소, 보건복지 콜센터(129)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예방접종 정보검색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http://nip.cdc.go.kr>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스마트한 예방접종 앱
안드로이드마켓 및 애플스토어에서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



클릭 한번으로 무료발급!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행일 : 2013년 12월

발행처 :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 481-3282 / FAX. 042) 481-7753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 6000-701~3 / FAX. 031) 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쇄 : 키크스코리아

발간등록번호 : 11-1220000-000336-14

2013 December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